

자료 08-04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

2008. 7

정책토론회 개요

□ 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14:30~18:00

□ 장소 :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

□ 진행순서

14:30~14:40 인사말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직무대행

14:40~18:00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자 : 곽태원 서강대 교수

14:40~15:40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

▶ 발표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토론자 : 김유찬 계명대 교수

심충진 건국대 교수

주영섭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현진권 아주대 교수

15:50~16:50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

▶ 발표자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김유찬 계명대 교수

이명현 인천대 교수

정원현 한국귀금속관련단체장협의회 회장

주영섭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17:00~18:00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 발표자 :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우영호 증권거래소 선물시장본부장

이창희 서울대 교수

정해근 대우증권 전무

주영섭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가나다 순)

18:00

폐회

제 1 주 제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

2008. 7.

김승래 · 홍범교 · 김형준 · 서희열

Kipf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론	1
II.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의 현황과 문제점	3
1. 부가가치세수 현황	5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의 현황과 문제점	8
3. 해외 사례	11
III.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의 정책 방향	14
1. 부가가치세제 면세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14
IV.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1.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17
2.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8
V.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확대 방안	19
1. 현행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9
2. 사업자과세단위제도의 확대방안	21
참고문헌	25

표 목차

<표 II-1> 본 연구의 주요 면세적용대상 범위와 분류	4
<표 II-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수의 비중	5
<표 II-3>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7
<표 V-1>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과세단위	20

I. 서론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 처음 시행된 이래 전면개정 없이 여러 차례 일부 개정만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 들어 고령화·양극화 문제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세제개편의 틀에서 부가가치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더욱이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조세체계의 효율성 증진과 안정적 세수확보 차원에서 향후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임
 - 뿐만 아니라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목표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 및 간이과세자 문제는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새로운 재화와 용역이 등장하면서 과·면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폭넓은 분야들이 면세 적용을 받고 있어서 과세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됨
- 최근 OECD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부가가치세제의 선진화 및 과세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면세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금융서비스 등 부가가치의 구분이 힘들거나 단순히 저율과세의 대안으로 면세되었던 품목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행 부가가치세제 운용상의 효율성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이론적으로 간접세로서의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의 조세효율성 증진과 과세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중간단계의 면세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과다한 품목의 현행 면세범위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적용 범위는 외국의 주요국과 비교할 때 광범위하여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는 공감대 형성

- 따라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면세제도와 간이과세자 문제를 중심으로, 이들 주요 정책 현안 이슈들에 대한 각종 제도와 정책평가, 그리고 경제적 분석을 시도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

□ 이에 먼저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당면 문제와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제도 비교와 부가가치세제 개편 사례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EU를 중심으로 유럽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체계 및 OECD 국가들의 표준면세범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면세부문별 정책과제를 제도적으로 알아봄

□ 또한 현행 사업장단위과세제도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간이과세 적용 등을 통하여 조세회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의 배치되므로, 우리나라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그러나 사업자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시 조세회피문제 및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사업자 과세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과 간이과세 문제,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등 주요 정책 현안 이슈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함

- 점증하는 재정소요 증대요인에 대비한 소득세제와 재산세 증가의 한계를 감안할 때,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개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효과와 정책방안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될 부가가치세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설정 및 정책판단을 위하여 매우 필요함

II.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의 현황과 문제점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은 우선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이에 따라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것임
 - 또 중간단계의 사업자에 대한 면세로 누적과세현상(Cascading Effect)이 발생함
 - 따라서 소득분배의 역진성 문제만 아니라면 면세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임

- OECD 개별 회원국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OECD 표준면세범위와 차이가 나도록 면세를 허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OECD 표준범위보다 다소 넓게 면세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비하면 뉴질랜드의 경우는 OECD 표준보다 현저하게 좁은 범위로 면세를 허용하고 있음
 - OECD 표준면세범위와 조금도 차이가 없도록 자국의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체 OECD 국가 중 단지 독일과 룩셈부르크 정도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표준세율이 각각 17.5%, 19.6%, 19%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5%, 5.5%, 7%의 경감세율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음
 - 경감세율 적용은 일반세율보다 세율 격차도 크면서 동시에 사업자의 환급이 허용되므로 면세제도보다 세부담 감면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표 II-1> 본 연구의 주요 면세적용대상 범위와 분류

분석의 면세품목 그룹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내역
1. 미가공식료품, 농림축수산물	-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과 소금 포함) 국내생산 비식용의 농·축·수·임산물
2. 도서, 신문, 잡지 등	- 도서(전자출판물 포함) 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방송 등 -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3. 정부 및 정부대행업체	- 국가·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4. 여객운송	-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과세)
5. 금융·보험	- 금융·보험용역
6. 교육	- 정부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신고한 교육용역 (무허가·무인가 교육용역은 과세, 교육내용 불문)
7. 의료보건	- 의료보건용역(의약품의 단순판매는 과세)과 혈액
8. 위생, 청소소독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조 청소용역, 소독업, 폐기물관리 등
9. 기타	-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제조담배 및 특수제조용담배 -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 단체의 재화·용역 -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임대용역(상가와 그 부수 토지 임대용역 과세) - 법정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공인회계사·세무사· 변호사·관세사·변리사 등의 전문인력 제공 용역은 과세) - 토지의 공급(토지의 임대는 과세) - 수돗물(생수 제외), 연탄·무연탄(유연탄·갈탄·착화탄은 과세)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유아용 위생용품은 과세)

1. 부가가치세수 현황

- 최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2>와 같음
-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우리나라 세수의 3대 세목을 구성하고 있는데, 2001년에 약 26조원이 징수된 이후 2002년에는 약 22.3%의 세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 그 이후에는 3~5%의 비율로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는 약 38조원의 세수를 기록하였음
 - 간접세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소비세이며, 2001년 이래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30%로서, 3대 세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II-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수의 비중

(단위 : 십억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GDP	622,123	684,264	724,675	778,445	806,622	847,876
국 세	95,793	103,968	114,664	117,796	127,466	138,044
내 국 세	74,027	82,226	92,231	95,276	104,428	113,880
간 접 세	35,081	40,606	42,514	43,037	45,483	47,928
부가가치세 (전년대비 증가율)	25,835	31,609 (22.3)	33,447 (5.8)	34,572 (3.4)	36,119 (4.5)	38,093 (5.4)
부가가치세/GDP	4.2	4.6	4.6	4.4	4.5	4.4
부가가치세/국세	27.0	30.4	29.2	29.3	28.3	27.5
부가가치세/내국세	34.9	38.4	36.3	36.3	34.6	33.4
부가가치세/간접세	73.6	77.8	78.7	80.3	79.4	79.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살펴보면 <표 II-3>과 같음.
인원으로 보면 법인은 10%가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의 경우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개인납세자 가운데 일반납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중은 2001년도에는 간이과세자가 약 49%로서 일반납세자보다 많았는데, 2003년부터 일반납세자의 비중이 간이과세자보다 많아져서 2006년 기준으로 각각 약 52%와 38%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면 법인 대 개인 비중의 역전 현상이 일어남

○ 법인의 비중이 82~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비중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간이과세자의 비중은 1~2% 정도에 불과하고, 납부세액으로 본다면 그나마 0.3% 내외의 미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표 II-3>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단위: 명, 억원, %)

	신 고 인 원				과 세 표 준				납 부 세 액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계
		일반	간이			일반	간이			일반	간이	
2001	321,204 (8.66)	1,573,217 (42.42)	1,814,614 (48.92)	3,709,035 (100.00)	12,433,732 (82.05)	2,454,034 (16.19)	266,125 (1.76)	15,153,891 (100.00)	228,449 (81.77)	50,167 (17.96)	760 (0.27)	279,376 (100.00)
2002	345,292 (8.71)	1,774,268 (44.77)	1,843,894 (46.5)	3,963,454 (100.00)	14,159,550 (82.06)	2,824,369 (16.37)	271,102 (1.57)	17,255,021 (100.00)	267,527 (82.80)	54,598 (16.90)	978 (0.30)	323,103 (100.00)
2003	359,154 (8.99)	1,861,707 (46.90)	1,773,804 (44.40)	3,994,665 (100.00)	15,565,243 (82.68)	3,008,677 (15.98)	252,766 (1.34)	18,826,686 (100.00)	273,027 (81.87)	59,430 (17.82)	1,038 (0.31)	333,495 (100.00)
2004	372,041 (9.03)	1,924,877 (46.70)	1,645,329 (39.92)	3,942,247 (100.00)	17,812,752 (83.70)	3,228,273 (15.17)	239,832 (1.13)	21,280,857 (100.00)	268,631 (78.69)	71,587 (20.97)	1,142 (0.33)	341,360 (100.00)
2005	400,398 (9.71)	2,117,551 (51.38)	1,603,663 (38.91)	4,121,612 (100.00)	18,575,818 (84.24)	3,459,367 (15.69)	16,154 (0.07)	22,051,339 (100.00)	292,045 (77.89)	82,031 (21.88)	851 (0.23)	374,927 (100.00)
2006	42,0454 (9.88)	2,216,802 (52.03)	1,623,990 (38.11)	4,260,946 (100.00)	20,145,074 (84.04)	3,800,085 (15.85)	26,204 (0.11)	23,971,363 (100.00)	307,492 (76.29)	94,686 (23.49)	829 (0.21)	403,007 (10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의 현황과 문제점

- 부가가치세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면세 대상이 추가되어 현재 지나치게 넓게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는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누적효과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 일부 품목이 면세 대상이 됨으로써 유사한 성격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면세화 요구가 계속 제기되는 것임
 - 또한 면세가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수 효과 및 누적효과에 의하여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세수에 있어 그 역할 증대가 예상되는 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의 조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우선 금융·보험용역과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정부공급용역 및 문화예술관련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문제를 살펴보고자 함

가. 금융·보험용역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국제화와 규제 완화를 통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 제한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래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금융·보험용역의 중개기능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일관된 결론을 내기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이론적 지지를 받고 있음
 - 다만 현실적으로 그 대가를 다른 요인에 의한 대가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음
 - 그동안 연구의 결과, 현금흐름 접근법(cash-flow approach) 등 몇 가지 과세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나름대로의 문제점으로 현실 적합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보험용역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과제임
 - 다만 현 단계에서도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수취하는 부수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의 검토가 가능함
 - 과세 전환의 우선 대상으로는 명시적인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부수적인 업무를 선정하되, 부가가치세 부과에 의한 self-supply bias를 고려하여, 과세 전환이 사업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임

나. 의료보건용역

-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건용역은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지출이므로 의료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 면세하였음
 - 즉, 국민보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부터 계속하여 면세를 적용해 오고 있음

- 그러나, 1977년 7월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되던 당시에 비하면 30년 이상
지난 오늘의 사회적 환경은 매우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 중에서도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은 의료보건용역 면
세에 비추어 커다란 환경적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즉, 전 국민으로의 의료보험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과거 의료비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려는 면세 결정의 한 원인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의료보건용역은 여타 인적용역과 비교해 보면 유사한 측면이 많으므
로 지난 1999년부터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전환과 같은 맥락에서 과세 전
환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다. 교육용역

-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을 5분위 계층별로 분류하여 각 분위별 소비지출 중
에서 교육비의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중 교육비
의 비중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1분위 저소득계층이 공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비가 지출된다고 가정
하면 5분위 고소득계층은 저소득계층의 5.24배 정도를 사교육비로 지출
한다고 추론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용역 면세범위에는 영리단체인 사설학원이나 강습소
등이 모두 포함
 - 그러나 이들 학원이나 강습소 등은 주로 고소득층이 이용하고 있어

면세 적용의 역진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 그러므로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이러한 사설학원 등 사교육에 면세할 경우 오히려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될 것임

라. 정부공급용역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6호)가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마. 문화예술관련 인적용역

- 문화예술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그 대상이 지정되고 있음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등이 그 대상이고 저술가 혹은 작곡사의 인적용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혜택이 주어짐

3. 해외 사례

- OECD는 회원국들의 면세범위에 대하여 '표준면세'를 규정하여 부가가치세에서 공통적으로 면세되는 분야를 정해 놓았음
 - 표준면세에 해당하는 분야는 우편서비스, 환자우송, 의료서비스, 인간의 혈액, 세포조직 및 장기, 치과치료, 자선사업, 교육, 비영리기관의 비상업적 활동, 스포츠, 문화서비스(TV와 라디오 제외), 보험 및 재보험, 부동산 임대임

- 현실적으로 보면 각 회원국들은 표준면세 이외의 분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면세하거나 또는 표준면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 등 다양하게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가. 금융·보험용역

- EU 국가의 경우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업무인 여·수신 업무에 따른 수입이자, 지급이자, 외환업무,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대상임
 - 그러나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있음

나. 의료보건용역

- EU의 경우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세함
 - 프랑스의 경우
 - 의료협회회원에 의하여 치료비가 면제된 자에게 제공하는 치료 및 법으로 자격이 인정된 치료사 또는 공공병원에서 치료시점에 제공되는 심리치료·정신분석치료 및 신체검사와 치과의사 및 인공보철기구 제작자에 의한 의치, 공공건강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설병원의 병원비 및 치료비(개인병실 사용료를 포함), 노인에 대한 사설병원의 치료 중 사회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비가 면제되는 치료행위

○ 독일의 경우

- 의사·치과의사·재활치료사·건강체조사(병원체육사)·조산원 기타 이에 준하는 의료 활동과 약제사의 직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
- ※ 단, 수의사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수입, 의치와 악부정형외과 기구의 공급 또는 수리는 제외됨
- 또한 공공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진료소 기타 의학상 치료·진단 또는 검사를 행하는 시설의 경영과 양로원, 노령자 거주지와 개호시설

다. 교육용역

□ EU의 경우 공교육에 한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 초·중·고·대학교의 교육용역, 기술 또는 전문교육용역,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인증에 따른 사립기관에 의한 직업교육만이 면세 대상임

○ 독일의 경우

- 사립학교와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시설, 훈육·훈련 및 연수목적 또는 유아보육 목적을 위하여 주로 청소년(27세 미만)을 수용하는 인적 및 물적 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식사 및 통상 현물급여의 공급만이 면세 대상임

라. 정부공급용역

□ 우리나라는 정부 또는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반면, EU는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는 조세의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를 하고 있음

Ⅲ.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의 정책 방향

- 향후 정부지출 증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새로운 세원 확보의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한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는 조세제도 자체의 전반적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욱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조세원칙상 부가가치세제 면세범위의 최소화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면세품목을 최종적으로 공급받는 대다수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정되어야 함

1. 부가가치세제 면세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 이론적으로 볼 때,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일관적인 결론은 없음
 - 또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인데, 금융 자체는 최종적인 소비가 아니라는 이론도 있음
 - 다만, 금융용역의 중개기능에 의한 대가를 다른 대가와 구별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음
-
- 그러나 현 단계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편 방안을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전반적이며 현실적인 과세 방식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현행의 면세제도를 유지하는 것임

- 자통법의 제정으로 금융투자업이 새롭게 정의됨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정비는 필요함

○ 두 번째는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수취하는 부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의료보건용역의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면세범위를 축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인간에게 제공되는 것과 공익목적의 활동 이외에 모든 의료보건용역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즉, 공익성을 가진 의료보건용역이라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인간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예방에 한정된” 의료보건용역만 면세를 허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공교육이나 사교육의 구분 없이 모든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앴으로써 전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음

○ 그러나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사설학원이나 강습소 등 사교육에도 면세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사교육에 대한 면세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라는 면세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교육용역의 경우, 사설학원 등의 교육비 지출은 소득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공교육과 관련된 용역”이외에 모든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함

○ 그러나 사설학원이나 강습소 등의 교육용역을 과세로 전환한다면 사교육비 증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교육용역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반면, 교육용역을 비영리교육과 영리교육으로 분류하여 성인대상 영리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부공급용역의 경우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지닌 것은 현행대로 유지 하지만, 민간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철도용역, 지자체 등의 음식점 및 공 단 분양 등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필요한 경우 조세 정책과는 별도 차원의 재정지원은 검토될 수 있음)

- 철도운송용역 (예: KTX는 현재 과세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업무
-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업무
- 연연초생산물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업무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업무
- 농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 등이 수행하는 업무
- 사회기반시설 시행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 그리고 사회적 권장재로서 문화예술관련 인적용역은 사회적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과세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산업의 수요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예 술관련 인적용역에 대해 과세로 전환할 경우,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 문화산업의 발전은 그 산업 자체의 성장으로 인한 직접적 고용창출효 과뿐만 아니라, 문화상품 개발의 원천이 되는 문화·예술활동의 활성 화와 여타 산업의 문화화를 가져와 간접적인 고용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IV.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 간이과세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도 기준으로 전체 부가가치세 납세 인원 4,260,946명중 간이과세자는 1,623,990명으로 38.11%로 높은 편임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26,204억원으로 전체 23,971,363억원 중 0.11%로 극히 미미한 실정임
 - 한편 납부세액 중에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비중은 0.21%로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우리나라는 국민의 납세의식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낮은 납세의식은 거래 관계에서 인간적·경제적인 면을 강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조세회피의 방관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
 - 더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 산정의 선행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 이전의 부가가치세 단계에서부터 원초적인 조세회피행위가 시작되고 있음
 - 이러한 낮은 납세의식 속에서 간이과세제도를 계속하여 존치한다면 소규모사업자들의 조세회피 성향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음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 범위에 안주하려는 자영업자들로 인하여 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없음

- 이는 근거과세를 저해하고 탈세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탈루는 소득세의 탈루로 이어짐
 - 이와 같은 사업자들의 탈루는 근로소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함
- 우리나라의 소규모 사업자들은 자신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여 간이과세사업자 영역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음
- 이런 사실은 1999년도 말을 기준으로 기존의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된 당시 국세청 통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음

2.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간이과세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은 사업자들이 매출을 누락시키기 힘들도록 하는 납세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는 실제 영세 및 소규모 사업자가 존재하는 한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V.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확대 방안

1. 현행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과세단위로 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에 있었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서 사업자를 과세단위로 하는 제도를 일부 도입하였음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에서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각 사업장은 독자적으로 등록과 신고를 해야 함
 - 2006년 12월에 있었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i) 전산시스템 설비를 갖추고 있고, (ii)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단위과세단위제도를 일부 도입하였음

<표 V-1>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과세단위

	사업장단위과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사업장	사업장	사업자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사업장	사업자
신고	사업장	사업장	사업자
납부	사업장	사업자	사업자
특례제도 적용 기준	사업장	사업장	사업자
적용 기준	원칙	세무서장의 승인	전산시스템 세무서장의 승인

- 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그룹으로의 등록이나 분리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들만이 아니라 최근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호주 등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그리고 일반소비세를 유지하는 싱가포르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기업들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사업자가 그룹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사업장별로 또는 부서별로 분리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적절히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장별로 또는 부서별로 분리하여 등록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체 사업체의 매출액을 합하여 판정하고 있음

□ 현행 사업장단위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과세단위로 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장을 과세단위로 하고 있어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장 사이의 내부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 부가가치세에서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제도(납세의무면제자 포함)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사업자가 갖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수나 규모와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고 있어 간이과세자가 양산되고 또한 소규모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사이의 공평과세의 원칙이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자과세단위제도의 확대 방안

- 외국의 추세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세목에서의 신고와 납부를 일괄적으로

- 하게 되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법인의 경우 현재 사업자수가 50.1만개이고 사업장의 수가 60.6만개
이므로, 현재의 제도를 사업자과세단위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0.06%를 절감하게 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재 사업자수가 420.8만개 사업장의 수가 470.1
만개이므로, 현재의 제도를 사업자과세단위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이
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17%를 절감하게 되어, 이들이 납부한
총부가가치세액 9.8조원의 0.54%인 531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 (2005년도 귀속분 기준)
 - 수입분 부가가치세도 동일한 비율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고 가정하면, 전체 부가세액 36.1조원의 0.54%인 1,950억원의 납세협
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005년도 귀속분 기준)
 - 이외에도 사업장 간 재화와 용역의 반출이나 반입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어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이 예상
되며 또한 일부의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모든 세목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게 되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one-stop 서비스와 같은 세정 서비스의 확
대와 납세자 유형별 조직으로 국세청 조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징세비가 납세협력비용의 절반 정도의 수준임을 고려하
면, 약 1,000억원 미만의 징세비 절감이 예상됨
-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전체 과세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구분되어 간이과세자

의 수가 줄어들고 또한 공평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음

□ 하지만 사업자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사업장 단위의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기에는 기업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을 하는 조세회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일부 세수의 감소가 있을 수도 있음
- 현재에는 최소한 부가가치세에서만이라도 세무서가 관할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세원을 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원관리가 용이한 반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원관리의 수단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사업자과세단위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도 법인세나 소득세의 적용범위나 대상과 일치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같은 사업자는 모든 세목을 동일한 세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즉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주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법인세법 제9조와 소득세법 제6조 참조)
- 사업자 과세방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그룹으로의 등록이나 분리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그 요건을 엄격히 규

정할 필요가 있음

- 분리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등의 특혜제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 사업장이나 부분별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판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예외의 허용은 기본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을 위한 것이므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김승래, 「부가가치세제 면세범위 조정의 경제적 효과」, 『조세연구』 제8-1집, 한국조세연구포럼(편), 세경사, 2008.

김승래·박명호·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7-14, 한국조세연구원, 2007.12.

김유찬·윤태화·서희열, 「소비세 분야의 세제개혁방향」, 『세무와 회계저널』 제9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6.

김형준·박명호,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서희열, 『소비세제법』, 세학사, 2008.

서희열·김승철, 「간이과세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9호, 한국세무학회, 1997.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오연천, 「부가가치세의 면세·영세율대상의 재검토」, 『부가가치세제의 과제와 개선』, 대한상공회의소, 1987.

이성식, 『부가가치세법 해설』, 조세신보사, 2005.

최명근·나성길, 『부가가치세법론』, 세경사, 2005.

차신준, 「세무행정에서 있어서의 납세순응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 제9권, 한국조세학회, 1995, pp.215~257.

홍범교 외, 『금융산업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4.

<외국문헌>

金子宏、『租税法 第十一版』、弘文堂, 2006.

水野忠恒,『租税法』, 有斐閣,, 2007.

齊藤力夫,『非營利法人の消費税 - 計算と申告書作成のすべて-』, 中央経
済社. 1990.

岩崎政明,「消費税の特例計算方法—中小事業者に係る特例措置—」、
「日税研論集」30号、(財)日本税務研究センター,1995.

日本税制調査會,『抜本的な税制改革に向けた基本的考え方』, 2007

日本税制調査會,「平成15年度における税制改革についての答申—ある
べき税制の構築に向けて—」, 2002.

EC, *VAT Rates Applied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Community*,
2008. 1.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2007) *Goods and Services Taxes:
Do I Need to Register?*
([http://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Quick_Links
/e-Tax_Guides/GST/Do%20I%20need%20to%20register_Final_01070
7.pdf](http://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Quick_Links/e-Tax_Guides/GST/Do%20I%20need%20to%20register_Final_010707.pdf))

Murray, Matthew and William Fox, *The Sales Tax in the 21th
Century*, Praeger, London, UK, 1997.

National Tax Agency apan, *An Outline of Japanes Tax Administration*, 2003
(http://www.nta.go.jp/foreign_language/report2003/tab/tab07.htm)
(http://www.nta.go.jp/foreign_language/report2003/tab/tab08.htm)

Terra, Ben and Julie Kajus *A Guide to the European VAT Directives*,
IBFD, 2007.

Wareham, Robert and Alan Dolton, *Tolley's Value Added Tax*,

LexisNexis, Tolley, London, UK, 2003.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6.
_____, *Consumption Tax Trends Draft Tables for 2008 Edition*, 2007.
OECD CTPA/CFA/WP(2008)19, *Proposal for the Special Feature:
Consumption Taxation as an Additional Burden on Labor Income*, 2008. 5.

<홈페이지>

日本 財団法人専修學校教育振興會 홈페이지 <http://www.sgec.or.jp/>
日本 國稅廳 홈페이지 <http://www.nta.go.jp>
日本 稅制調査會 홈페이지 <http://www.cao.go.jp>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홈페이지 <http://www.ndl.go.jp>
IBFD, <http://www.ibfd.org>
OECD, <http://www.oecd.org>

제 2 주 제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

2008. 7

성 명 재

 한국조세연구원

I. 문제의 제기

-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보완을 목적(사치세)으로 도입되었으나 지속적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로 최근에는 사치세 기능이 상실
 - 소비패턴의 고도화·대중화에 따라 사치세로서의 기능이 퇴색
 - 2008년부터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개별소비세로 개칭
- 사치세 기능 상실에도 불구하고 국민 소비생활구조가 근본적으로 뒤바뀐 현 시점에서 볼 때 과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대상이 일부 잔존
 - 투전기, 오락용품, 녹용 및 로얄제리, 향수, 보석·귀금속 제품, 모피, 용단, 가구, 승용자동차, 석유류 및 천연가스,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 등 개별소비세를 광범위하게 과세
 - 소득재분배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사치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관련 산업의 수요기반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
- 최근 ‘시장의 실패 교정적 조세’로서의 개별소비세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
 - ‘사치세 →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로서의 면모 일신이 필요
 - 담배의 경우 국민보건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흡연억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의 소비세 체계는 그러한 기능이 미흡
- 개별소비세제 전반에 대해 과세의 목적, 기능, 역할,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의 범위 재조정 및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의 모색이 필요

II. 과세현황

1. 과세대상과 세율 및 세수현황

□ 2008년 6월 현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 제1종: 투전기, 사행성오락기구, 수렵용 총포류, 녹용·로얄제리, 향수
- 제2종: 보석·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시계·모피·용단·가구
 - 제1~2종의 경우 대체로 사행성 품목들로 구성
 - 과세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심각하며 세수는 매우 미미
- 제3종: 승용자동차
- 제4종: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석유가스, 천연가스, 부생유)
 - 제4종은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외부비용 감
 - 안시 피구후생적 조세(Pigouvian tax)로의 기능에 충실할 필요
- 과세장소: 경마장, 투전기장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표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2008년 6월 현재)

품목	세율	품목	세율
<제1종>		<제4종>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20%	휘발유 및 유사 대체유류	630원/ℓ (525원/ℓ)
수렵용 총포류	20%	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	454원/ℓ (372원/ℓ)
녹용 및 로알제리	7%	등유 및 유사 대체유류	90원/ℓ (63원/ℓ)
방향용 화장품	7%	중유 및 유사 대체유류	17원/ℓ
		석유가스	프로판 20원/kg(28원/kg) 부탄 360원/kg(252원/kg)
		천연가스	60원/kg
		부생연료유	90원/ℓ (42원/ℓ)
<제2종>		<과세장소>	
보석	20%	경마장	500원
귀금속제품	20%	투전기장	10,000원
고급사진기	20%	골프장	12,000원
고급시계	20%	카지노	50,000원
고급모피	20%	- 폐광지역카지노	3,500원
고급용단	20%	- 외국인	2,000원
고급가구	20%	경륜장	200원
<제3종>		<과세유흥장소>	
중용자동차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	10%
-배기량 2000cc 초과·캠핑용자동차	10%	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배기량 2000cc 이하·이륜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 제외)	5%	장소	

주: 1. () 안은 탄력세율

2.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

- 2006년 현재 개별(특별)소비세는 4조 9,034억원으로 국세 대비 3.6%
- 세수의 대부분은 자동차와 석유류(제3~4종)로부터 징수
 - 제1~2종의 경우 납부세액이 7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과세실적이 미미
 - 국내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사실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보석·귀금속제품만을 보더라도 연간시장규모(업체추정 3조~6.5조원)를 볼 때 과세물량의 비중은 매우 낮다는 유추가 가능

<표 2>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의 품목별 과세현황

구분	과표 단위	신고 인원 ¹⁾ (1)	과세표준 (2)	산출세액 (3)	공제세액 (4)	가산세 (5)	납부할 세액 (6=3-4+5)	교육세 (7)	농어촌 특별세 (8)
2005년		7,642	-	3,414,858	371,126	352	3,044,084	**	**
2006년		7,647	-	3,287,287	400,770	274	2,886,791	610,592	47,356
과세물품별	백만원	369	-	2,976,366	400,759	3	2,575,610	517,292	391
오락용기구 ²⁾	백만원	7	1,292	256	6	-	250	73	23
수렵용 총포류	백만원	-	-	-	-	-	-	-	-
녹용, 로얄제리	백만원	1	72	5	3	-	2	-	-
방향용 화장품	백만원	23	23,184	1,619	51	-	1,568	469	154
보석 및 진주	백만원	32	30,251	6,043	5,164	-	879	261	-
귀금속제품	백만원	138	49,428	9,871	7,730	-	2,141	639	-
고급사진기	백만원	1	9	1	-	-	1	-	-
고급시계	백만원	1	90	17	2	-	15	4	-
고급모피	백만원	21	10,727	2,119	-	-	2,119	634	210
고급음단	백만원	-	-	-	-	-	-	-	-
고급가구	백만원	1	238	45	-	-	45	13	4
승용자동차 ³⁾	백만원	38	5,678,796	573,970	10,619	2	563,353	169,001	-
캠핑용자동차	백만원	2	11,354	1,133	2	-	1,131	338	-
승용자동차 ⁴⁾	백만원	55	8,872,218	443,663	106,178	1	337,486	101,226	-
이륜자동차	백만원	2	5,358	266	-	-	266	79	-
등유	kl	5	5,098,274	683,166	61,744	-	621,422	93,211	-
중유	kl	13	21,045,877	336,268	125,522	-	210,746	31,610	-
프로판	톤	11	664,940	26,596	208	-	26,388	-	-
부탄	톤	16	2,758,581	847,027	83,530	-	763,497	116,111	-
천연가스	톤	1	335,764	20,145	-	-	20,145	-	-
부생유	kl	1	234,528	24,156	-	-	24,156	3,623	-
과세장소별	천명	150	18,453	164,275	-	7	164,282	49,279	46,965
경마장	천명	3	2,686	1,342	-	-	1,342	402	-
투전기 시설장소	천명	-	-	-	-	-	-	-	-
골프장	천명	143	13,047	156,561	-	7	156,568	46,965	46,965
카지노(내국인)	천명	1	1,766	6,183	-	-	6,183	1,855	-
카지노(외국인)	천명	-	-	-	-	-	-	-	-
경륜장	천명	3	954	189	-	-	189	57	-
과세유흥장소별	백만원	7,128	1,466,612	146,646	11	264	146,899	44,021	-
유흥음식주점	백만원	7,114	1,465,813	146,569	3	264	146,830	44,003	-
외국인전용음식점	백만원	14	799	77	8	-	69	18	-

주: 1) 신고인원은 12월 귀속 기준(1개업체가 다수의 과세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원이 중복 가능)

2)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3) 2,000cc 초과

4) 2,000cc 이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2. 개별소비세의 부담 분포

가. 개별(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휘발유와 경유 제외)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실효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매우 컸기 때문

○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의 고급화·고가화·대중화가 빠르게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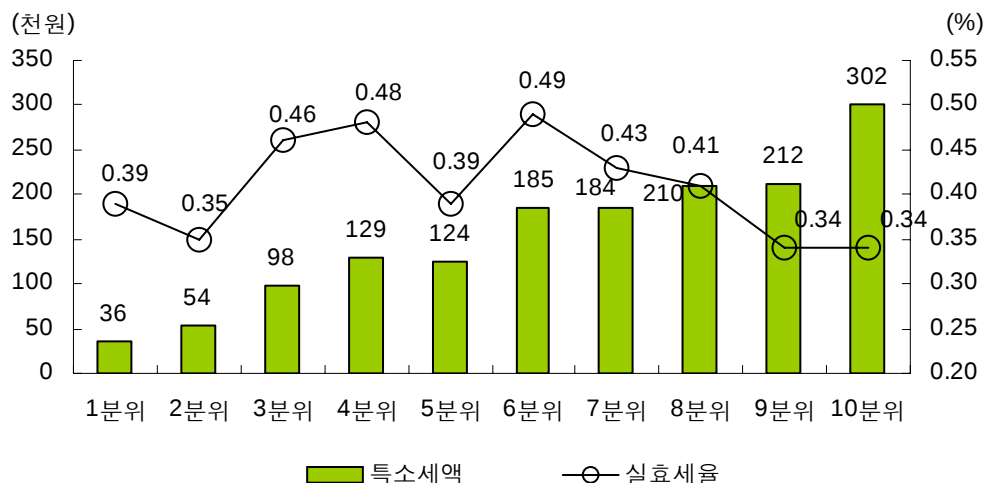
□ 소득계층별 특별소비세 실효세부담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상당히 누진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누진도가 급격히 축소되었고 일부에서는 역진적

○ 1990년대 이후 가전제품, 식음료품 등 세부담이 역진적인 품목을 비과세

○ 이는 특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이 사라졌음을 시사

□ 2007년의 경우 소득계층별 개별소비세의 총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 분포는 0.4% 수준을 중심으로 들쭉날쭉하며 누진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림 1] 개별(특별)소비세의 소득계층별 분포(2007년)



□ 세전소득 지니계수 대비 개별소비세후 소득 지니계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1990년대말까지 정(+)의 재분배 효과를 시현(<표 3> 참조)

○ 정(+)의 재분배 효과는 1990년대 초가 가장 큰데, 이는 그 시기에 가전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

○ 1990년대 후반부터 개별(특별)소비세의 재분배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부(-)의 재분배 효과, 즉 세후 지니계수를 상승시키고 있어 형평과세의 의도와 달리 역기능이 발생

<표 3> 주요 개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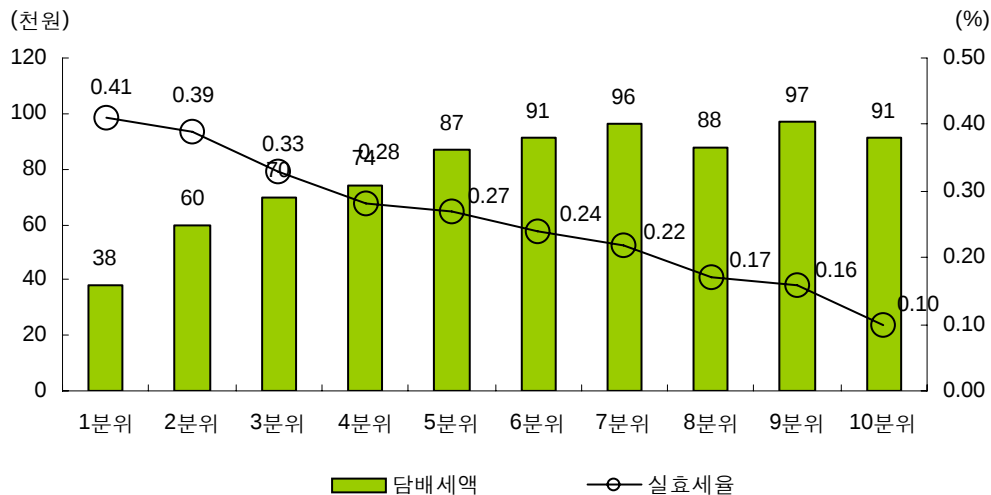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지니(A)	A-개별소비세	A-교통세	A-개별소비세-교통세	A-담배소비세
1982	0.27380	0.27339	0.27377	0.27335	0.27501
1983	0.27075	0.27057	0.27072	0.27054	0.27182
1984	0.26909	0.26884	0.26908	0.26883	0.26999
1985	0.26188	0.26172	0.26188	0.26170	0.26287
1986	0.26007	0.25996	0.26006	0.25995	0.26089
1987	0.26629	0.26639	0.26626	0.26637	0.26725
1988	0.25628	0.25600	0.25626	0.25599	0.25705
1989	0.25631	0.25557	0.25629	0.25555	0.25717
1990	0.24024	0.23821	0.23960	0.23762	0.24088
1991	0.23098	0.22898	0.23019	0.22818	0.23147
1992	0.22865	0.22693	0.22773	0.22600	0.22905
1993	0.23153	0.22925	0.23073	0.22844	0.23198
1994	0.23209	0.23098	0.23119	0.23006	0.23253
1995	0.23111	0.23054	0.23039	0.22943	0.23139
1996	0.23665	0.23605	0.23585	0.23524	0.23712
1997	0.27225	0.27176	0.27202	0.27152	0.27299
1998	0.30313	0.30341	0.30303	0.30331	0.30409
1999	0.25732	0.25712	0.25612	0.25592	0.25802
2000	0.27039	0.27001	0.27004	0.26965	0.27109
2001	0.26075	0.26076	0.26000	0.26000	0.26152
2002	0.26997	0.26999	0.269231	0.26925	0.27061
2003	0.27136	0.27144	0.27129	0.27138	0.27197
2004	0.27678	0.27704	0.27672	0.27698	0.27740
2005	0.28138	0.28157	0.28127	0.28146	0.28202
2006	0.31535	0.31542	0.31458	0.31465	0.31585
2007	0.30998	0.31010	0.30930	0.30941	0.31042
A 대비 변화율(%)	가처분소득 지니(A)	A-개별소비세	A-교통세	A-개별소비세- 교통세	A-담배소비세
1982	-	-0.15	-0.01	-0.16	0.44
1983	-	-0.07	-0.01	-0.08	0.40
1984	-	-0.09	-0.00	-0.10	0.33
1985	-	-0.06	-0.00	-0.07	0.38
1986	-	-0.04	-0.00	-0.05	0.32
1987	-	0.04	-0.01	0.03	0.36
1988	-	-0.11	-0.01	-0.11	0.30
1989	-	-0.29	-0.01	-0.30	0.34
1990	-	-0.84	-0.27	-1.09	0.27
1991	-	-0.87	-0.34	-1.21	0.21
1992	-	-0.75	-0.40	-1.16	0.17
1993	-	-0.98	-0.35	-1.33	0.19
1994	-	-0.48	-0.39	-0.87	0.19
1995	-	-0.25	-0.31	-0.73	0.12
1996	-	-0.25	-0.34	-0.60	0.20
1997	-	-0.18	-0.08	-0.27	0.27
1998	-	0.09	-0.03	0.06	0.32
1999	-	-0.08	-0.47	-0.54	0.27
2000	-	-0.14	-0.13	-0.27	0.26
2001	-	0.00	-0.29	-0.29	0.30
2002	-	0.01	-0.27	-0.27	0.24
2003	-	0.03	-0.03	0.01	0.22
2004	-	0.09	-0.02	0.07	0.22
2005	-	0.07	-0.04	0.03	0.23
2006	-	0.02	-0.24	-0.22	0.16
2007	-	0.04	-0.22	-0.18	0.14

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대비 소비세 과세후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변화율이 음수(위에서 음영처리한 부분)이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정(+)의 효과, 즉 세부담이 누진적이며 반대로 양수이면 부(-)의 효과, 즉 세부담이 역진적임을 의미

나.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 부담은 1982년(전매익금을 세액으로 환산) 가구당 평균 2만원에
서 2001년 10만 2천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07년 7만 9천원으로 감소
 - 최근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감소한 것은 소비감소에 기인
 - 담배는 1990년대 중반까지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
- 담배수요의 소득 비탄력성으로 인해 소득계층별 담배소비는 평준화
 - 빈곤층·노년층 비율이 높은 1~2분위를 제외하면 소득계층별 담배소비
세의 절대세부담 격차가 매우 작은 편
 - 따라서 담배소비세 부담은 저소득층일수록 실효세율이 높은 역진적 구조
- 담배의 경우 세부담의 역진성이 있으나 형평성보다는 흡연의 유해성에 기반
한 사회적 외부비용 문제가 더 심각하므로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대안
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2] 담배소비세의 소득계층별 부담 분포(2007년 기준)



3. 개별소비세의 국제비교

- 선진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주류, 담배, 석유류의 세 가지가 주종
 - 이들 품목 외에는 매우 제한적·예외적으로 개별소비세제를 운용
 - 세입보다는 환경보호, 도로파손 방지, 국민보건위생 증진 등이 주 목적
 - 예: 미국의 타이어세, 영국과 네덜란드의 환경세 등
 - 소득재분배 목적의 사치세로 과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반면에 대만과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과거 특별소비세와 유사한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대만에서도 점차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축소 및 세율인하중
- 우리의 경우 담배에 대해 국세 소비세가 없는데, 국제적으로 매우 이례적
 - 미국, 독일 등 연방국가에서는 지방세와 국세가 혼재하는 경우가 일반적
 - 죄악세 또는 소비억제적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대부분 국세로 과세

4. 과세기능의 변화

- 개별(특별)소비세는 도입 당시에는 사치세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에 특화되었으나 경제성장 및 소득향상의 결과, 세부담이 역진적으로 변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
 -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상당수가 소비저변의 확대 또는 생활필수품화함에 따라 과세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사치세 기능이 사실상 폐기
 - 2008년부터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개별소비세로 전환된 것도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
- 사치세 기능이 사라지거나 과세의 실효성이 없어 고급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에도 불구하고 사치세로서 기능하지 못하면서 탈세·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등 세정 및 정상적인 관련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과세가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런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조치가 필요
- 관련 세제가 장애요소라면 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망

□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 및 생산성의 비약적 상승은 경제행위의 기회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는 다시 음주·흡연의 간접비용(또는 사회적 외부비용)을 가속적으로 증대

- 산업생산의 비약적 증대 및 자동차 보급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화석에너지 소비 및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혼잡비용이 크게 증가

□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사회적 외부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면서 ‘삶의 질’ 저하 및 국민보건위생 측면에 심각한 위협을 주기 시작

- 주류, 담배, 석유류와 같은 전통적인 재정품목의 소비와 관련하여 외부불경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후생경제학적 처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

Ⅲ. 주요 과세대상의 시장여건

1. 보석·귀금속제품

- 우리나라 보석·귀금속제품의 시장규모는 3.5조~6조원(업계추정치 2004, 귀금속경제신문) 수준으로 추산되나 국내생산기반은 취약
 - 1만 3천여개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3만 8천명 정도가 종사(업계추산)
 - 영세가공업체의 생산가동률은 65% 수준(2006년 11월 현재, 업계 추산)에 불과하여 필수고용인만 고용되어 있는 실정

- 보석·귀금속제품의 경우 현재 총수출이 총수입보다 크기는 하지만 수출은 급감추세인 반면 수입은 급증추세
 - 중국·베트남 등 해외 현지가공 및 수입 증가 가속화로 무역수지 악화
 - 귀금속·보석류(HS 71류) 무역수지(자료: 관세청) (단위: 백만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29백만달러	323백만달러	609백만달러	729백만달러

- 개별소비세 과세로 고가품시장의 음성화 및 무자료거래 성행, 탈세 등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가 차단되어 관련 산업 발전에 장애
 - 2006년 현재 부과기준 과세실적은 30억원(납부세액 기준)에 불과
 - 높은 기술수준 및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이 크게 저해
- 유통시장의 음성화로 인해 과세자료가 따라다니는 국내생산제품의 경우, 무자료거래되고 있는 밀수품·밀조품 등에 비해 원천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어 국내생산·유통기반이 취약

- 이에 따라 손기술과 품질 좋은 고급노동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보석·귀금속 산업은 원천적으로 경쟁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국내 보석·귀금속 제품의 경쟁력 향상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익산 등에 조성된 익산의 보석·귀금속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국내 관련 산업이 국내시장규모에 비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보석·귀금속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사치세의 명분이 존재하나 과세실효성 및 산업 측면에서 볼 때 부적절
- 과세논리상 소비세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과세 예를 찾기 어려움
 - 개별소비세 과세 → 탈세 → 정상적 시장 위축 → 국내 관련 산업의 판로 봉쇄 및 산업기반 위축 → 신기술·신제품 개발 부진 → 경쟁력 약화 → 판로축소 및 산업기반 위축 → …의 고리를 끊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검토 필요
- 보석·귀금속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는 사치세로서의 명분이 점차 약화되고 상당수 탈세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의 탈세를 저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

2. 기타 품목

- 고급가구, 고급시계, 고급용단, 고급사진기, 고급모피와 동제품 등의 경우 초과금액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영수증 분할’ 등을 통해 상당부분 탈세 추정
- 가격 기준으로 시장을 양분함에 따라 시장·생산·소비자 왜곡을 통해 국내업체의 고급품 시장 진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 초래
-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잠재력에 비해 고급품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취약

○ 예1: 국내시계시장 규모 : 7,600억원(2007년, 업계 추산)

이 중 국산품은 3,400억원(비중 44.7%)

- 품질·디자인 등은 유럽, 일본과 대등하나 가격은 중국, 홍콩 등에 열위

○ 예2: 모피제품 시장규모 : 3,800억원(2007년, 업계추산)

- 개별소비세 기준금액초과과세제도로 인해 고가품 시장 활성화 및 기술 개발 등이 지연되는 등 고급화 전략수립이 어려워 산업발전이 저해

□ 녹용의 경우 동물보호 등의 차원에서 과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생산·수입·유통에 대한 직접규제가 보다 바람직

□ 로얄제리는 고가이지만 식품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시대역행적

○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도 시대역행적

□ 상기 품목들에 대한 사치세로서의 개별소비세 과세는 선진국에서 찾기 어려운 실정

□ 수렵용 총포류, 사행성 오락기구, 투전기 등의 경우 사행행위를 조장하기 때문에 소비억제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중이나 기능상 부적절

○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한 간접규제는 실효성이 낮고 직접규제가 정공법인 만큼 개별소비세 과세가 부적절

□ 골프장의 경우 사치세로 과세되고 있으나, 골프의 대중화 추세, 동남아지역으로의 골프관광으로 인한 외화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을 감안할 때 개별소비세의 지속적 과세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음.

□ 카지노, 경마장, 경륜·경정장 등 과세장소의 경우 도박성·사행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로 인해 외부불경제를 야기한다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과세의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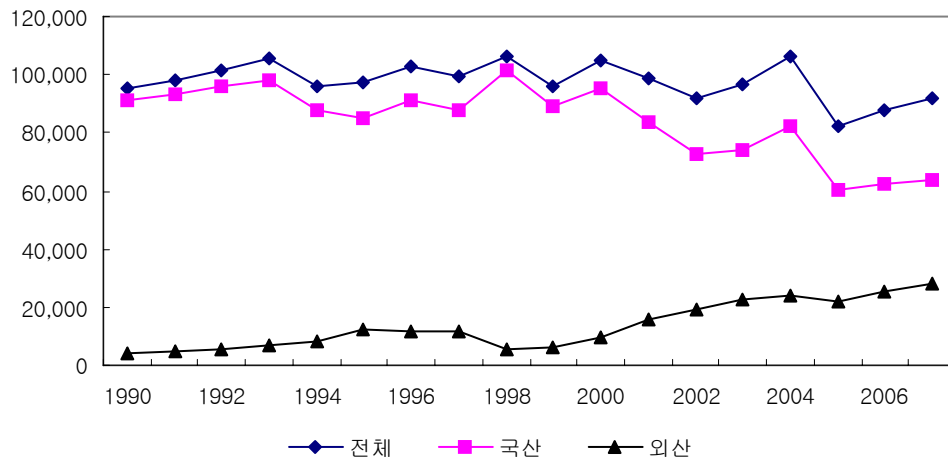
-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소비억제 차원에서 과세하고 있으나, 탈세·무자료거래를 통해 여타 세목의 세원이 침식되는 등 개별소비세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문제점

3. 담배 시장

- 우리나라의 담배 소비는 연간 900억~1,000억개비(또는 45억~50억갑) 수준
 - 2000년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최근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
 - 1990년대말 이후의 제세공과금 인상과 금연운동의 활성화 등에 기인

[그림 3] 연도별 담배소비 추이(1990~2007년)

(단위: 백만개비)



- 담배소비세는 죄악세로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나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수입원으로 기능하고 있어 소비억제 효과가 제한적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담배소비세의 본래 목적 중 하나인 담배소비의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유인이 크지 않음

○ 오히려 지방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담배소비를 권장할 논리적 개연성도 존재하여 담배소비세 과세 본연의 목적과 상충

□ 그러므로 담배 관련 소비과세가 본래의 죄악세 또는 소비억제적 조세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세로 과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다만 현재 담배소비세수가 지방세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수준의 지방세분 소비세는 유지해주는 것이 현실적

□ 아울러 국민보건위생 측면에서 볼 때 담배와 마찬가지로 주류의 경우에도 소비시에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축소의 필요성이 큰 만큼 장기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틀 안에서 과세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

IV. 과세체계 개선방향

1. 개별소비세 관련 기존 연구의 결과 소개

□ 성명재(1993A)

-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 해당
- 주요 연구범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중 과세최저한 제도가 적용되던 고급모피제품 및 고급보석·귀금속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의 적정성과 개편방향을 제시
- 분석결과: 이미 1990년대 초반에도 고급모피, 보석·귀금속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는 대부분이 탈세되어 실효성이 없고, 탈세범 양산 및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들어 폐지 또는 세율인하, 초과금액과세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

□ 성명재(1993C)

-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제 전반에 대해 경제발전단계, 소득·소비패턴의 변화추이, 세부담의 형평성, 산업경쟁력 측면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개편방안을 제시
- 개별소비세의 과세기능을 종전의 사치세에서 외부불경제로 인한 ‘시장의 실패’ 교정적 조세로의 면모일신의 필요성을 주장
 - 주세: 고도주-고세율 체계로의 전환
 - 특별소비세: 소비대중화 품목에 대한 세율인하·비과세 및 석유류 등에 대한 과세 강화
 - 담배 관련세: 과세체계 개편 및 세율조정방안 제시

□ 성명재(1996B)

- 석유류 과세와 관련하여 외부불경제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고세율-고가격 체계의 확립을 주장

□ 나성린(1997)

- 가전제품 등 생활필수품화한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비과세
- 소형항공기, PC,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발굴하여 과세
- 기존 과세대상 중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과세 강화
- 그랜드형 피아노, 석유류 등의 경우 세율 인상의 여지가 있음

□ 성명재·장근호(1999)

- 가전제품과 식음료품 등을 중심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중 생활필수품인 품목에 대해 비과세를 주장
- 연구결과가 세제개편에 반영되어 개편

□ 성명재(2001A, 2006A), 김정훈 외(2004)

- 담배 관련 세제개편방안을 검토
- 고세율-고가격 정책 전환을 통해 담배소비의 억제를 도모할 필요성을 주장

□ 김승한(2004)

- 에어컨 등은 소비의 대중화 추세를 감안하여 비과세 방안을 고려
- 보석·귀금속 등은 사치품에 해당되므로, 비록 현재 과세의 실효성은 낮으나 지속적인 세원관리 및 신종 사치품의 발굴·과세를 주장
- 자동차 특별소비세에서의 과세대상 기준과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규격이 서로 다른 부분을 일치시킬 것을 주장
- 유종간 세율격차 축소 및 유사취발유에 대한 과세를 주장
- 골프의 대중스포츠화 추세를 감안하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비과세 문제를 제안·권고

2. 고려사항

□ 개별소비세 과세의 정당성 판정기준의 설정

- 품목별 단일과세(기준1): 품목내 차등과세보다는 단일과세가 바람직
- 경쟁력 저해 여부(기준 2): 산업경쟁력 현저히 저해시 비과세가 바람직
- 사치세 여부(기준 3): 소비패턴의 고도화·대중화 품목은 비과세 바람직
- 지하경제 양성화(과표양성화)(기준 4): 개별소비세 과세가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 산업활성화·국내생산기반 확충(기준 5): 산업경쟁력 구비에 필수적인 국내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개별소비세의 비과세가 바람직
- 규제·통제수단(기준 6): 규제·통제수단으로서의 소비세 과세는 부적절

<표 4> 개별소비세 과세의 적정성 판단기준과 조세의 과세원칙

		효율성 측면	형평성 측면	단순성 측면	징세·납세협력비용
기준 1	품목별 단일과세	○		○	
기준 2	경쟁력 저해 여부	○			○
기준 3	사치세·대중화		○		
기준 4	지하경제 양성화			○	○
기준 5	산업활성화·양성화	○			
기준 6	규제·통제수단			○	○

□ 개별소비세(excise duties)의 과세대상 선정과 세율 책정에 있어서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

- 사치세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수요 측면의 고려가 우선
- 그러나 사치세 성격의 퇴색하여 수요 측면의 중요성이 떨어질수록 과세 대상 선정 및 공급 측면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이 증대

□ 종전에는 특별소비세로 대표되는 개별소비세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치세로서 세부담의 형평 제고가 주된 목적이었으나 소비가 대중화된 현

시점에서 사치세의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어 사실상 사라진 상태에 도달

- 소비세 과세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및 시장 육성 등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성·효과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증대

□ 그 밖에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및 납세협력도, 과세의 실효성 등 과세현실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

- 명분상으로는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세행정 차원에서도 과세의 어려움이 큰 경우에는 대부분이 탈세되는 것이 현실
- 이런 경우 실효성은 없으면서도 명분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당수의 납세자 및 소비자를 중심으로 잠재적인 범법자로 양산할 가능성이 큼
- 또한 양성화된 공식적인 시장을 위축시키는 한편 음성적인 지하경제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반적인 납세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우려

□ 개별소비세제의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국내 생산이 없어 100%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또는 수입·소비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진국에서는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는 없는 실정

□ 선진국의 개별소비세제의 공통된 특징은 외부불경제 축소를 목적으로 주류, 담배, 석유류 등을 대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

- 주류, 담배, 석유류는 흔히 3대 재정품목이라고 지칭하면서 비교적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
-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들 3대 재정품목에 대해 종량세 체계로 과세

□ 상당수의 선진국에서 이들 재정품목에 대해 고세율을 책정하는 이유는 소비억제 등을 통한 사회적 외부비용의 축소, 즉 소비억제가 주된 목적

3. 개선방안

- 장기적으로 주류, 담배, 석유류를 개별소비세의 틀 안에서 함께 과세하는 것이 개별소비세제의 합리성·정당성·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바람직
 - 다만 담배의 경우 부담금의 정비문제, 주류의 경우 주세법과 주류행정규제의 분리·정비문제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추진할 필요
- 고급가구·시계·카메라·보석·귀금속제품, 녹용과 로얄제리 등의 과세대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고가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는 개별소비세 과세의 실효성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
 - 개별소비세의 비과세가 관련 산업 활성화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에 해당
- 수렵용 총포류, 사행성오락기구, 투전기 등은 과세의 실익과 의의가 없고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한 통제·규제의 실익도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기준 6)
- 녹용·로얄제리, 향수(방향용 화장품)의 경우 동식물 보호, 수입억제, 사치품 과세 등을 주된 목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실효성 및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행정부담만 가중시키는 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기준 3, 6)
- 제2종 물품의 경우 기준금액 초과과세제도가 동일품목내 자원배분 왜곡 및 국내산업의 경쟁력 저해 효과가 크므로 동일과세원칙(또는 단일과세원칙, 기준 1)의 확립이 필요하며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보았을 때 기준금액 상향 조정 방식보다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함이 바람직(기준 1, 2, 3, 4, 5)

- 보석·귀금속제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한 음성적 시장 형성, 탈세·무자료거래 및 그에 따른 국내산업기반 붕괴 문제 등 산업왜곡 및 시장음성화, 세원침식 등과 같은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기준 1, 4, 5)
- 사진기, 시계, 모피, 용단, 가구의 경우 고가품 시장에서의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데,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고가품 시장의 진입·개척이 봉쇄되는 등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기준 1, 2, 3)
- 과세장소의 경우 골프장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장소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중기적 과점에서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카지노 등 기타 과세장소의 경우는 사행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감안하여 과세 유지가 바람직
-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퇴폐·향락 문화에 대한 규제·억제 차원에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한 탈세조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탈세조장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과세자료 생산 및 근거과세 실현, 유통정상화 등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비과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기준 4, 6)
- 그 밖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당분간 개별소비세의 과세를 존속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의 지속적인 과세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필요
 - 우리나라는 세계 제5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서 세계시장에서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지만, 세계 유수의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자동차에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

<표 5> 개별소비세 개편방향

(단위: 원, %)

품목	현행 세율	개편방향	조정 사유
<제1종>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 수렵용 총포류 ◦ 녹용 및 로알제리 ◦ 방향용 화장품	20% 20% 7% 7%	비과세	기준 6 기준 6 기준 3, 6 기준 6
<제2종> ◦ 보석 ◦ 귀금속제품 ◦ 고급사진기 ◦ 고급시계 ◦ 고급모피 ◦ 고급용단 ◦ 고급가구	20% 20% 20% 20% 20% 20% 20%	비과세	기준 1, 4, 5 기준 1, 4, 5 기준 1, 2, 3 기준 1, 2, 3 기준 1, 2, 3 기준 1, 2, 3 기준 1, 2, 3
<제3종>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초과 및 캠핑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및 이륜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 제외)	10% 5%	현행 체계 유지 (중·장기적으로 과세의 적정성 검토 필요)	
<제4종> ◦ 휘발유 및 유사 대체유류 ◦ 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 ◦ 등유 및 유사 대체유류 ◦ 중유 및 유사 대체유류 석유가스 ◦ 부탄 ◦ 천연가스 ◦ 부생연료유	630원/ℓ 454원/ℓ 90원/ℓ 17원/ℓ ◦ 프로판 360원/kg 60원/kg 90원/ℓ	현행 체계 유지 (중·장기적으로 적정세율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	
<과세장소> ◦ 경마장 ◦ 투전기장 ◦ 골프장 ◦ 카지노 - 폐광지역카지노 - 외국인 ◦ 경륜장	500원 10,000원 12,000원 50,000원 3,500원 2,000원 200원	현행 유지	기준 6 기준 6 기준 3, 6 기준 6
<과세유흥장소> ◦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10%	현행 유지 (중기적 관점에서 과세의 적정성 검토 필요)	기준 6 기준 4, 6

4. 담배 관련 과세체계의 정비

☐ 중장기적으로 담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하되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폐지·대체(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소비세 과세를 통한 담배소비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지방세분 소비세(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도 국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재정의 안정화 측면에서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담배세(현행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포함)의 과세체계는 현행과 같은 종량세 체계가 바람직

5. 기대효과

가. 산업활성화 및 세수효과: 보석·귀금속제품을 중심으로

- 비정상적인 유통구조가 정상화됨에 따라 보석·귀금속제품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
 - 보석·귀금속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비과세하면 정상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및 정상제품의 유통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수출주력상품으로의 도약도 기대 가능
-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보석·귀금속제품의 시장규모는 6,400억원 수준
 - 실효세율 10% 가정시 탈세규모는 600억원 추정(과표양성화율: 5~6%)
 - 개별소비세 비과세시 양성화 시장 규모는 960억~2,240억원 정도로 추정
 - GDP의 0.01~0.02% 증가 및 1,140~2,670명의 고용창출 예상
- 생산·유통구조의 정상화 및 과세자료 양성화를 통해 최소 약 40억~120억원 이상의 세수증가가 예상
 - 개별소비세 비과세로 인한 세수감소: 30.2억원 (2006년 납부세액 기준)
 - 과표양성화를 통한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세수증가: 77억~154억원
 - 단기적인 세수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으로 판단

- 그러므로 보석·귀금속 산업의 경우 세수효과뿐만 아니라 음성적 시장의 정상화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더욱 클 수 있음

나. 기타 효과

- 사진기, 시계, 모피, 용단, 가구 등의 경우 유수 선진국에 비해 국내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데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고가품 시장의 개척·진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
 - 그러므로 개별소비세 비과세시 경쟁력 배양의 걸림돌 제거가 기대
 - 비과세시 장기적으로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失보다 得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영수증 분할’ 등의 관행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탈세 목적의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도 상당부분 정상화되면서 다소의 세수 증가가 예상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국세분 담배세(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소비세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V. 정책시사점

- 개별(특별)소비세는 1977년 7월 도입 이래 1990년대초까지 사치세로서 기능하였으나 소비패턴의 고도화·고가화·대중화를 통해 사치세 기능이 미약
 - 반면에 최근에는 주류, 담배, 석유류 등 소비시에 외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이 한계효용을 초과하게 되어 비효율이 크게 증가
 - 따라서 개별소비세의 과세목적이 ‘시장의 실패’ 교정적 조세 또는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소비억제적 조세의 방향으로 급선회

- 개별소비세 과세 기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세에 대해 사치세로서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업경쟁력 약화 및 산업 고용 저해 등 부작용이 발생
 - 경제발전단계 및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수요관리적 측면에서의 개별소비세 과세의 득은 거의 없는 반면 산업위축을 통한 산업생산 저조 및 고용 부진, 지하경제 확대 등 마이너스 효과로 인해 失득이 훨씬 더 큰 실정

- 보석·귀금속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관련산업의 지하경제 양성화 및 정상적 산업의 활성화, 사진기, 시계, 모피, 용단, 가구 관련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과세실효성이 지극히 낮고 부작용이 심대한 개별소비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 경제발전, 소득향상, 소비패턴의 고도화·대중화, 산업경쟁력 강화·확대 및 시장양성화 등을 감안할 때 공급측면에 주안점을 둘 필요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 특히 보석·귀금속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최소 수천억원대의 음성시장 양성화, 세수증가, 국내 관련기업의 시장 확보 및 산

업활성화를 통해 소득 및 고용증대가 기대

- 담배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소비억제적 조세·죄악세로서의 면모 일신 검토 필요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세 담배세로 폐지·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지방세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담배 관련세의 과세체계는 현행의 종량세 체계의 유지가 바람직

참고문헌

- 곽태원, 「우리나라 특별소비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개발연구』, 제9권 제3호, 한국개발연구원, 1987, pp. 27~43.
- 김승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관한 소고: 과세대상의 고찰 및 개선방안」, 『재정정책논집』, 제6집, 한국재정정책학회, 2004, pp. 183~202.
- 김정훈·성명재·손원익, 『담배 관련 기금 및 세제개편방안』,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나성린, 「특별소비세의 현황과 과제」, 『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97, pp. 185~198.
- 서희열, 「소비세제의 평가와 개편방향」,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1998.
- 성명재, 『소비세 부담 분포와 고세율 상품시장의 정상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3-02, 한국조세연구원, 1993(A)
- _____, 「소비세에 대한 도·농별 소득계층별 세부담 및 역진도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제8집, 한국재정학회, 1993(B).
- _____, 『개별소비세제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성명재·김진수 공저, 연구보고서 93-08, 한국조세연구원, 1993(C).
- _____,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정책보고서 96-08, 한국조세연구원, 1996.
- _____, 『특별소비세 부담 분포 추정 및 과세체계 정비방안』, 정책보고서 99-04, 한국조세연구원, 1999.
- _____,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담배 관련 세제의 개편방향』,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1(A).
- _____, 「세법개정효과 및 소득·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세부담 효과의 분리 추정에 관한 연구」, 『재정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B).
- _____, 「소득계층별 조세·이전지출 분포와 소득재분배」, 『응용경제』, 제8권,

- 제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06(B), pp. 5~45.
- 성명재 · 박기백, 『조세 · 재정지출의 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 통산 제56호, pp. 63~94, 한국재정학회, 2008.
- 성명재 · 박임수,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비교분석 연구』, 세법연구 07-08,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성명재 · 장근호, 『특별소비세 세율 및 과세대상 정비방안: 식음료품을 중심으로』,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이명현 · 성명재, 『조세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외부불경제 유발 재화의 소비세율 인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02-06,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조계근, 「소비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향」,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1999.
- Ramsey, F. P.,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axation," *Economic Journal* 37, 1927, pp. 47-61.

부록

<부표 1>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비교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형태	원화환산	각국화폐	원화환산	각국화폐	원화환산	각국화폐	원화환산
주류 (1L)	맥주	증가세	72%	\$0.21	197	£0.13	241	\$0.31	263
	와인	증가세	72%	\$0.33	320	£1.78	3,131	\$0.62	522
	증류주	증가세	72%	\$4.44	4,245	£7.82	13,769	\$11.69	9,852
담배 (1갑)	필러	종량세	962원	\$1.26	1,203	£2.17+22% (3,822원+22%)		\$1.64	1,382
유류 (1L)	휘발유	종량세	630원	\$0.11	101	£0.52	906	\$0.1	84
	경유	종량세	404원	\$0.12	117	£0.48	850	\$0.04	34
자동차	2,000cc이하	증가세	5%	n/a		n/a		\$1,872	1,576,823
	2,000cc초과	증가세	10%						
개별품목		-투전기 등 -수렵용 총포 -녹용,로알제리,향수 -보석·귀금속 -고급제품(사진기, 시계, 모피, 용단, 가구)		-중장비 -타이어 -대형자동차 -낚시 및 활 장비 -백신 -통신및운송서비스 -환경세(원유,ODC)		-환 경 세 (콘 크 리 트 제조용 골재세, 기 후변화세, 쓰레기 매립세)		자동차에 이용되는 에어컨	

<부표 1>의 계속

		일본		대만		홍콩		중국	
		각국화폐	원화환산	각국화폐	원화환산	각국화폐	원화환산	각국화폐	원화환산
주류 (1L)	맥주	¥220	1,807	\$26	764	증가세	20%	0.25元	30
	와인	¥80	657	\$70	2,508	증가세	40%	증가세	10%
	증류주	¥400	3,040	\$185	5,439	증가세	100%	증가세	10%
담배 (1갑)	필립	¥175	1,437	\$16.8	494	\$16.08	1,978	(0.06元+45%) (7원+45%)	
유류 (1L)	휘발유	¥48.6	399	\$6.83	201	\$6.06	178	0.2元	24
	경유	n/a		\$3.99	117	\$1.11	33	0.1元	12
자동차	2,000cc이하	n/a		증가세	25%	n/a		증가세	3-5%
	2,000cc초과			증가세	35%			증가세	9-20%
개별품목		전기세 골프코스 이용세 온천세		-타이어 -시멘트 -음료수(과일 주스, 청량음료 등) -유리 -전자제품(냉장고, TV, 에어컨, 세습 기, 비디오, 카세트, 녹음기, 전축, 전자오븐) -유흥세(영화, 공연 장, 당구장, 볼링 장, 골프장 등)		n/a		-타이어 -화장품 등 -장신구·보석·귀 금속류 -골프공 및 용품 -고급 손목시계 -요트 -회용 나무젓가락 -원목바닥재(마루)	

주: 주류 - 리터단위로 환산, 와인은 알콜도수 10% 기준, 1(와인)갤론=3.78L, 증류주는 알콜도수 40% 기준, 맥주는 5%기준, 1톤=1,000L

담배 - 20개피 1갑 기준, 부가가치세는 제외, 소비세(교육세포함, 각종 부담금 제외)

자동차세 - 캐나다는 자동차의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 일반적인 승용차의 중량인 1,450kg을 기준으로 함

미국은 연방세+주세(평균값 기준), 캐나다는 연방세

자료: 성명재·박임수(2007)

<부표 2> OECD국가의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 비교

국가명	대상품목
오스트리아	-설탕
벨기에	-설탕 -포장세(cotisation d'emballage)
캐나다	-자동차용 에어컨
체코	-CFC(Ozone-Depleting Chemicals)
덴마크	- 식료품(초콜릿, 설탕, 아이스크림, 커피, 차, mineral water) - 환경(쓰레기세, 살충제, 제초제, CFC, CO ₂ , 재충전 ni · cd 배터리, 납축전지, carrier bassmade of paper, plastic etc., 질소, PVC and phthalates) - 기타(전구, 전기, 자동차번호판, certain retail containers, 식탁용식기류, 대형요트, 타이어, 성장촉분제(specific growth stimulants))
핀란드	-음료수(non alcoholic beverages) -의약품
프랑스	-은에 대한 보증세(Garantie matieres or et argent) -식용고기 거래에 대한 세금(Taxe sanitaire et d'org. marche des viandes) -곡물(Taxe sur les cereales) -밀가루(Taxe sur les farines) -난방전기세(Taxe sur electricite et chauffage) -육류고기(Taxe sur crops gras alimentaires) -소, 돼지, 양 등(Taxe sur les viandes) -의약품(pharmacies)
독일	-전력(power) -커피 -cotisation sugar UE
그리스	-솜(coton)
헝가리	-커피
이탈리아	-설탕(sucre) -전기세(energie electrique)
네덜란드	-소프트 드링크 -소음(noise pollution) -환경세(environmental basis) -식료품(food products) -설탕저장세(sugar storage duty)
노르웨이	-초콜릿, 사탕 -설탕 -음료수(non alcoholic beverages) -전기 -라디오, TV -화장품 -CO ₂ tax -의약품

주: OECD 조세분류(Classification of Taxes)의 대분류 5000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조세 중, 중분류-5120-특정(specific)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조세, 소분류-5121-Excises를 중심으로 정리

원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자료: 성명재 · 박임수(2007)에서 재인용

제 3 주 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2008. 7.

홍 범 교

목 차

I. 서론	1
II.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3
1. 세계시장 동향	3
2. 우리나라의 현황	6
3. KOSPI 200 선물과 옵션	8
III.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수수료 부과현황	13
1. 우리나라의 현황	13
2. 외국과의 비교	16
IV.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검토	20
1. 거래세 부과의 장단점	20
2. 외국의 경험	21
3. 거래세 도입시의 검토 사항	24
가. 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	24
나. 인도의 상품거래세 도입사례	27
4. 거래세 부과시 세부 고려 사항	33
가. 부과 대상	33
나. 납세의무자	33
다. 과세표준	35
라. 세율	35
5. 거래세 제도 정비 방안	36
V. 결론 및 요약	39
참고문헌	41

I. 서론

- 우리나라는 1995년 선물거래법의 제정으로 1996년 5월부터 주가지수선물 시장이 개설되어 장내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기 시작
 - 현재에는 주가지수선물·옵션을 비롯한 다수의 파생상품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음.
 - 거래규모도 KOSPI 200 옵션의 거래규모는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하였음.

- 그러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제도가 정비되지 못하여 현재 파생상품의 거래 및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반면, 파생상품의 거래가 활발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파생금융상품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세의 형태로 과세하고 있음.
 -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타당한 면이 있음.
 - 또한 파생상품시장에서 과열투기현상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세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음.

- 2004년 세법개정안에서도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현물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무산되었음.
 - 현물시장에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생상품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현물과 선물을 이용한 차익거래의 실행에도 장애가 됨.
 - 따라서 현물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소득과세는 양 시장의 유

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동시에 시행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지금까지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물시장에서의 자본이득과세 도입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선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때까지 거래세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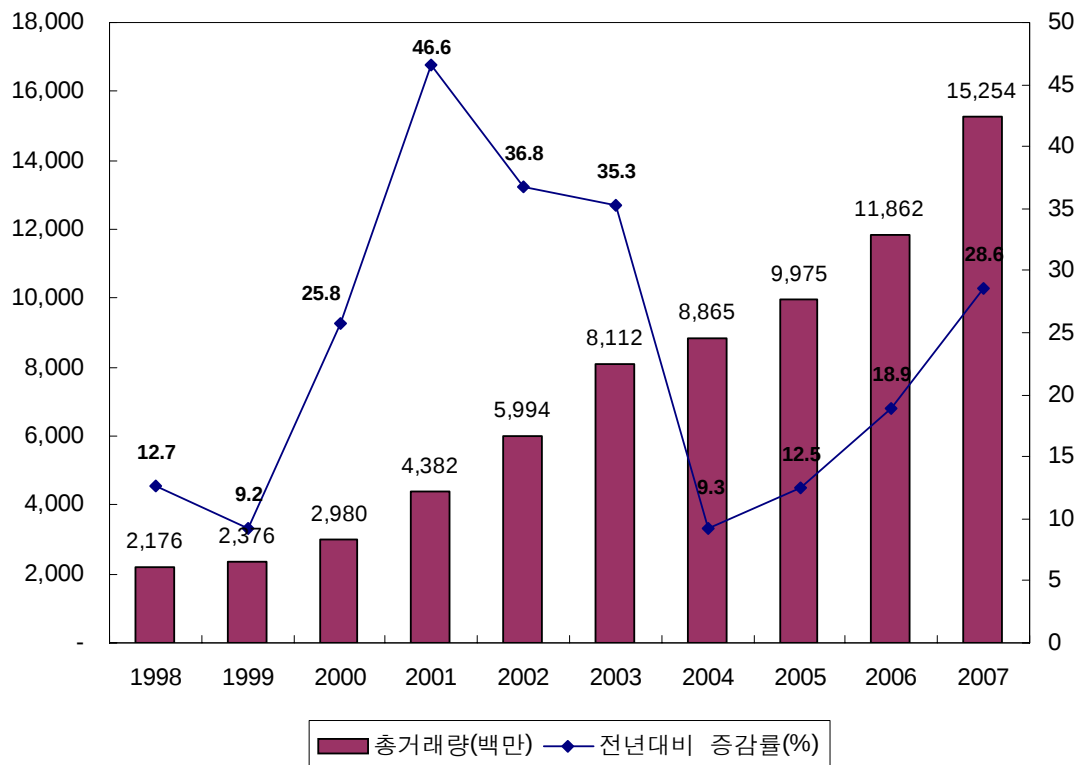
○ 따라서 본고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의 타당성을 거래세의 장단점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함.

Ⅱ.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1. 세계시장 동향

- 2007년 세계 파생상품 거래량은 전년대비 28.6%가 증가한 152.5억 계약을 기록하였음.
- 2001~2004년 사이에 거래 성장률이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원유, 농산물 등 원자재의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비금융상품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상품파생상품(commodity derivatives)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그림 II-1] 세계 파생상품 거래량 및 증감률 추이



□ 전 세계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을 통하여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및 기초상품에 따른 거래 비중 등을 살펴보면 <표 II-1>과 같음.

- 2005년 기준으로 장외거래의 비중이 장내거래의 약 5배 수준에 육박하는 등 장외거래의 비중이 훨씬 큼.
- 기초상품별로 보면 장내·장외 거래를 합하여 금리관련 상품이 가장 비중이 높음.
- 장내거래의 경우 금리관련 상품 다음으로 주식관련 상품의 비중이 크고,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주식관련 상품보다 통화관련 상품의 비중이 큼.

<표 II-1> 전세계 파생금융상품 거래(기말 명목원금¹⁾ 기준)

(단위: 10억달러, 배)

	1988(A)	1998	2000	2002	2004	2005(B)	B/A
장내거래 ²⁾	1,305	13,975	14,264	23,856	46,592	57,816	44.3
· 금리관련	1,175	12,655	12,642	21,715	42,769	52,297	44.5
· 통화관련	60	81	96	74	164	174	2.9
· 주식관련	70	1,239	1,526	2,066	3,659	5,345	76.4
장외거래 ³⁾	..	79,901	94,538	140,743	250,055	281,211	..
· 통화관련	..	18,011	15,666	18,448	29,289	31,609	..
- 통화스왑	317	2,253	3,194	4,503	8,223	8,501	26.8
· 금리관련	..	50,015	64,668	101,658	190,502	215,237	..
- 금리스왑	1,010	36,262	48,768	79,120	150,631	172,869	171.2
- 금리옵션	327	7,997	9,476	13,746	27,082	27,885	85.3
· 주식관련	..	1,488	1,891	2,309	4,385	5,057	..
· 기 타 ⁴⁾	..	10,387	12,313	18,328	25,879	29,308	..
계	..	93,876	108,802	164,599	296,647	339,027	..

주: 1) 명목원금(notional principal)은 각 파생상품 계약의 명목가치(face value)에 계약수를 곱하여 산출. 주가지수 관련 상품의 명목가치는 해당 지수에 지수당 가격을 곱하여 산출

2) FOW TRADEdata, Futures Industry Association, 기타 선물옵션거래소 등의 통계

3) BIS에서 G10국가의 주요 은행 및 딜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단, 1997년 이전은 ISDA 통계

4) BIS에서 3년마다 전세계 52개국에 걸쳐 실시하는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 Activity'에 근거한 추정치 포함.

자료: 한국은행(2006), p. 287.

□ 우리나라는 파생상품 거래량이 2002~2003년 세계 1위, 2004년 이후에는 세계 2위권 수준임.

- 거래량 성장률은 2007년에 전년대비 12.2% 증가하였으나 세계 10위권 국가의 평균 증가률(28.6%)에는 못 미침.
- 2000년대 들어서 세계 파생상품시장은 신흥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브라질, 인도 및 중국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표 II-2> 국가별 거래량(증감률) 추이

(단위: 백만계약, %)

연도 국가명	2003	2004	2005	2006	2007	
					비중(순위)	
미 국	2,172 (17.8)	2,795 (28.7)	3,525 (26.1)	4,573 (29.7)	6,091 (33.2)	39.9(1)
한 국	2,913 (49.5)	2,587 (-11.2)	2,593 (0.2)	2,475 (-4.6)	2,776 (12.2)	18.2(2)
독 일	1,015 (34.4)	1,066 (5.0)	1,249 (17.2)	1,527 (22.3)	1,900 (24.4)	12.5(3)
영 국	441 (28.7)	494 (12.0)	535 (8.2)	695 (29.9)	927 (33.4)	6.1(4)
브라질	298 (193.3)	419 (40.5)	468 (11.8)	571 (22.0)	794 (39.0)	5.2(5)
인 도	43 (224.2)	75 (74.3)	204 (171.2)	293 (44.0)	484 (64.9)	3.2(6)
중 국	130 (458.6)	172 (33.1)	187 (8.4)	267 (43.0)	452 (69.2)	3.0(7)
남아공	33 (6.5)	38 (16.3)	51 (33.8)	105 (104.7)	330 (213.8)	2.2(8)
일 본	204 (14.5)	204 (0.0)	193 (-5.6)	218 (13.0)	258 (18.4)	1.7(9)
멕시코	174 -	210 (21.0)	108 (-48.6)	275 (154.4)	229 (-16.8)	1.5(10)
전 체	8,111 (35.4)	8,865 (9.3)	9,975 (12.5)	11,862 (18.9)	15,254 (28.6)	100

주: () 안은 전년대비 성장률

자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KRX 선물시장의 어제와 오늘』, 2008.

2. 우리나라의 현황

- 국내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도입 초기에 증권거래소에서 시작
 - 1996년 5월에 증권거래소에서 최초로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시작되었고, 1997년 7월에는 동 거래소에서 주가지수 옵션거래가 시작되었음.
 - 선물거래소는 1999년 4월에 부산에 개소하여 원/달러 선물·옵션, CD 금리선물, 금선물이 상장된 데 이어 1999년 9월부터 국채선물이 거래되기 시작하였음.
 - 2005년 1월에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를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가 출범하여, 현재 KRX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음.

- 2008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선물거래소 선물·옵션시장에 상장된 상품은 총 14개이고 이 중 선물이 11개, 옵션이 3개임.
 - 선물·옵션의 기초자산 종류는 주가지수, 개별 주식¹⁾, 국채, 통안증권, 통화, 금리 등 6개임.
 - 최근 돈육선물 상장

1) 개별 주식의 경우 <표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물의 경우 15개 주식, 옵션의 경우 33개 주식을 대상으로 함.

<표 II-3> 상장상품 현황(2008년 5월 기준)

(단위: 개)

기초자산		선물	옵션	합계
주가지수		코스피 200 스타지수	코스피200 -	3
개별주식		15개 주식	33개 주식	2
금리	장기	3년 국채 5년 국채 10년 국채	- - -	3
	단기	통안증권	-	1
통화		미국달러 일본 엔 유로	미국달러	4
일반상품		금	-	1
합계		11	3	14

자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KRX 선물시장의 어제와 오늘』, 2008.

- 2007년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규모²⁾는 6경 6,301조원으로 전년 대비 47.9% 증가하였고 2007년 말 거래잔액은 4,782조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81.8%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³⁾.
- 2007년 장내시장 거래규모는 전체 거래규모의 87%인 5경 7,679조원으로 2006년에 비해 44.8% 증가하였고 장외시장 거래규모는 8,622조원으로 72.4% 증가함.
 - 거래규모의 증가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주가지수옵션 거래 금액이 증가한 데다 수출업체 및 해외펀드의 환위험 헤지용 통화선도 거래가 증가한 데 기인
 - 거래잔액은 은행의 대고객 통화선도 증가에 따른 위험관리 목적의 통화선물 거래 및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자율스왑 거래 증가에 기인

2) 명목금액 기준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8. 3. 27

<표 II-4>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잔액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05년	2006년(A)	2007년(B)	증감액(증감율)(B-A)	
거 래 규 모	장 내	34,417	39,826	57,679	17,853	15,271 (44.8)
	<주식옵션>	30,196	34,600	49,871	15,271	(44.1)
	장 외	4,010	5,002	8,622	3,620	(72.3)
	<통화선도>	3,153	3,315	5,820	2,505	(75.6)
합 계		38,427	44,828	66,301	21,473	(47.9)
거 래 잔 액	장 내	48	79	118	39	(49.4)
	<통화선물>	10	13	42	29	(49.4)
	장 외	1,678	2,551	4,664	2,113	(82.8)
	<이자율스왑>	726	1,245	2,332	1,087	(87.3)
합 계		1,726	2,630	4,782	2,152	(81.8)

주: 집계대상은 은행, 증권, 보험, 중금, 카드, 선물 및 간접투자운용기구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8. 3. 27.

3. KOSPI 200 선물과 옵션

□ 우리나라의 장내 파생금융상품 중에서는 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거래가 단연 압도적임.

○ <표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6월 중 이 두 가지 상품의 일평균 거래 계약수가 각각 1,098만건과 21만건을 초과하고 있음.

<표 II-5> 우리나라의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

종 목	도입일자	일평균거래(2008년 6월 중)	
		계약수(건)	계약금액(백만원)
코스피200선물	1996년 5월	211,612	23,888,427
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	2001년 7월	11,917	1,359,031
코스피200옵션	1997년 7월	10,981,230	941,163
주식선물	2008년 5월	17,822	38,370
주식옵션	2002년 1월	0	0
스타지수선물	2005년 11월	11	164
스타지수선물스프레드	2005년 11월	0	2
3년국채선물	1999년 9월	65,624	6,955,258
3년국채선물옵션 ¹⁾	2002년 5월	-	-
5년국채선물	2003년 8월	0	0
CD금리선물 ¹⁾	1999년 4월	-	-
통안증권금리선물	2002년 12월	0	0
미국달러선물	1999년 4월	25,029	1,291,058
미국달러옵션	1999년 4월	0	0
엔선물	2006년 5월	46	2,221
유로선물	2006년 5월	99	7,930
금선물	1999년 4월	1	21

주: 1) 2007년 12월 24일자 상장폐지
자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2007년 기준으로 KOSPI 200 옵션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 가운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6> 세계 10대 지수옵션별 계약 (거래량 기준)

(단위: 십만계약, %)

거래소	계약	2003	2004	2005	2006	2007	비중
KRX	KOSPI 200	28,377 (50.2)	25,216 (-11.1)	25,352 (0.5)	24,144 (-4.8)	27,098 (12.2)	68.8
EUROX	DJ EURO STOXX 50	618 (56.5)	714 (15.6)	908 (27.2)	1,500 (65.2)	2,514 (67.6)	6.4
CBOE	S&P 500	368 (22.8)	495 (34.6)	718 (45.1)	1,043 (45.3)	1,581 (51.5)	4.0
TASE	TA 25	29.4 (-0.2)	36.9 (25.8)	631 (70.9)	755 (19.6)	945 (25.2)	2.4
TAIFE	TAIEX	217 (1286.6)	438 (101.8)	801 (82.8)	969 (21.0)	926 (-4.5)	2.4
EUREX	DAX	415 (-5.7)	422 (1.6)	536 (27.1)	614 (14.5)	919 (49.6)	2.3
NSE	S&P CNX NIFTY	13 (323.7)	28 (111.1)	101 (260.6)	187 (84.4)	527 (181.8)	1.3
OSE	NIKKEI 225	150 (58.7)	166 (10.7)	249 (50.3)	285 (14.3)	29.2 (2.5)	0.7
EURONEXT	AEX STOCK	141 (54.6)	171 (21.1)	198 (15.6)	237 (20.0)	263 (11.0)	0.8
EURONEXT	FTSE	141 -	179 (22.2)	145 (-19.0)	157 (8.6)	237 (50.8)	5.6
전 체		32,711	30,282 (-7.4)	30,010 (5.7)	32,877 (2.7)	393,85 (21.2)	100

자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선물』, 2008. 5.

□ 주가지수 선물만을 비교할 때, KOSPI 200 선물도 2007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 성장하여 세계 8위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음.

<표 II-7> 세계 10대 주가지수선물 거래량 및 추이

(단위: 십만계약, %)

순위	거래소	계 약	2003	2004	2005	2006	2007	비중
1	CME	mini S&P 500	1,612 (39.3)	1,617 (3.7)	2,071 (23.9)	2,578 (24.5)	4,153 (61.0)	24.4
2	EUREX	DJ EURO STOXX50	1,160 (34.4)	1,217 (4.8)	1,400 (15.1)	2,135 (52.5)	3,270 (53.2)	19.2
3	NSE	S&P CNX NIFTY	106 (543.0)	234 (121.2)	474 (102.9)	703 (48.4)	1,388 (97.5)	8.2
4	CME	mini NASDAQ 100	679 (24.6)	772 (13.7)	725 (-6.1)	799 (10.3)	953 (19.2)	5.6
5	CME	RUSSELL 2000	39 (351.1)	171 (341.4)	289 (68.8)	417 (44.4)	607 (45.5)	3.6
6	EUREX	DAX	27.2 (35.9)	292 (7.5)	327 (11.9)	404 (23.5)	504 (24.7)	3.0
7	OSE	mini Nikkei 225	- -	- -	- -	62 -	491 (690.1)	2.9
8	KRX	KOSPI 200 INDEX	622 (45.1)	556 (-10.6)	438 (-21.1)	466 (6.3)	478 (2.5)	2.8
9	EURONEXT	CAC40	29.3 (11.0)	241 (-17.5)	250 (4.0)	334 (33.6)	447 (33.7)	2.6
10	CBOT	mini DJIA	109 (388.1)	207 (90.6)	249 (20.3)	268 (7.6)	401 (49.7)	2.4
	전 체		6,880 (30.5)	7,512 (9.2)	8,793 (17.1)	11,663 (32.6)	17,005 (45.8)	100

자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선물』, 2008. 5.

□ KOSPI 200 선물의 거래 추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II-8>과 같음.

- 주가지수선물은 상장된 다음 해부터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2년이 되는 1998년도에 1,789만계약이 거래되어 거래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거래량 기준으로는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거래대금 기준으로 1999년까지는 매년 100%를 초과하는 성장률을 보

이다가 그 이후 성장률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는 연평균 성장률 27.7%를 보임⁴⁾.

<표 II-8> KOSPI 200 선물거래량 및 거래대금

(단위: 계약, 백만원, %)

거래상품	연도	거래량		거래대금		미결제약정 수량
		합계	일평균	합계	일평균	
KOSPI 200 선물	1997	3,252,060 (354.44)	11,137 (203.46)	103,606,790 (237.59)	354,818 (125.45)	22,765 (363.83)
	1998	17,893,592 (450.22)	61,279 (450.23)	405,903,406 (291.77)	1,390,080 (291.77)	26,689 (17.24)
	1999	17,200,349 (-3.87)	69,078 (12.73)	821,408,692 (102.37)	3,298,830 (137.31)	38,026 (42.48)
	2000	19,666,518 (14.34)	81,604 (18.13)	859,711,142 (4.66)	3,567,266 (8.14)	30,052 (-20.97)
	2001	31,502,184 (60.18)	128,058 (56.93)	1,128,613,730 (31.28)	4,587,861 (28.61)	42,198 (40.42)
	2002	42,866,164 (36.07)	175,689 (37.19)	1,999,411,171 (77.16)	8,194,308 (78.61)	63,805 (51.20)
	2003	62,204,783 (45.11)	251,841 (43.34)	2,677,989,766 (33.94)	10,842,064 (32.31)	84,837 (32.96)
	2004	55,608,856 (-10.60)	223,329 (-11.32)	2,978,520,541 (11.22)	11,961,930 (10.33)	89,702 (5.73)
	2005	43,848,706 (-21.15)	176,099 (-21.15)	3,046,203,322 (2.27)	12,233,748 (2.27)	82,709 (-7.80)
	2006	46,606,008 (6.29)	188,688 (7.15)	4,071,888,975 (33.67)	16,485,380 (34.75)	90,953 (9.97)
	2007	46,862,948 (0.55)	190,499 (0.96)	5,174,122,467 (27.07)	21,033,018 (27.59)	76,791 (-15.57)
	평균	35,228,379 (84.69)	141,573 (72.51)	2,115,216,364 (77.55)	8,540,846 (70.65)	58,957 (47.23)

주: () 안은 전년대비 성장률.
자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통계연보』, 2008.

4) 1997년부터 포함하면 연평균 성장률은 <표 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77.6%에 이릅니다.

□ <표 II-9>는 KOSPI 200 주가지수 옵션의 거래 추이를 보여줌.

- 주가지수 옵션의 경우에는 주가지수 선물에 1년 먼저 상장되어 빠르게 성장하였기 때문에 상장 초기부터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음.
- 1997년에 상장된 이래, 1998년의 거래량은 전년 대비 7배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으며, 1999년에도 전년대비 2.5배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임.

<표 II-9> KOSPI 200 옵션거래량 및 거래대금

(단위: 계약, 백만원, %)

거래상품	연도	거래량		거래대금		미결제
		합계	일평균	합계	일평균	
KOSPI 200 옵션	1998	32,310,812 (613.51)	110,653 (246.98)	2,226,770 (611.33)	7,626 (245.85)	205,764 (-0.55)
	1999	79,936,658 (147.40)	321,031 (190.12)	8,631,648 (287.63)	34,665 (354.56)	383,207 (86.24)
	2000	193,829,070 (142.48)	804,270 (150.53)	16,620,835 (92.56)	68,966 (98.95)	536,818 (40.09)
	2001	823,289,608 (324.75)	3,346,706 (316.12)	47,344,221 (184.85)	192,456 (179.06)	2,681,265 (399.47)
	2002	1,889,823,786 (129.55)	7,745,179 (131.43)	125,227,755 (164.50)	513,229 (166.67)	4,845,491 (80.72)
	2003	2,837,724,953 (50.16)	11,488,763 (48.33)	159,686,525 (27.52)	646,504 (25.97)	3,102,844 (-35.96)
	2004	2,521,557,274 (-11.14)	10,126,753 (-11.86)	144,689,287 (-9.39)	581,081 (-10.12)	2,782,724 (-10.32)
	2005	2,535,201,693 (0.54)	10,181,533 (0.54)	140,825,408 (-2.67)	565,564 (-2.67)	3,299,722 (18.58)
	2006	2,414,422,955 (-4.76)	9,774,992 (-3.99)	144,533,723 (2.63)	585,157 (3.46)	3,468,456 (5.11)
	2007	2,709,844,077 (12.24)	11,015,626 (12.69)	218,373,551 (51.09)	887,697 (51.70)	2,712,938 (-21.78)
	평균	1,603,794,089 (140.47)	6,491,551 (108.09)	100,815,972 (141.00)	371,177 (111.34)	2,183,566 (56.16)

자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통계연보』, 각 연도.

Ⅲ.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수수료 부과현황

1. 우리나라의 현황

- 우리나라는 증권·선물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수수료와 회비 명목으로 증권유관기관이 받고 있음.
 - 최근 금융위원회⁵⁾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와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선물협회 등 4개 증권유관기관은 증권·선물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주식과 선물, 옵션, 채권 등 모든 거래상품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20% 인하⁶⁾
 - 이러한 수수료 인하 조치는 최근 주식·선물시장의 거래규모 확대에 따른 증권유관기관의 수입 급증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협회 통합,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동 수수료율 인하조치로 투자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수료 인하규모가 2007년 거래 규모 기준으로 연간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755억원, 증권예탁결제원 220억원, 한국증권업협회 114억원, 선물협회 11억원
 -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에서는 사장단 간담회를 통하여 증권·선물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평균 0.18%)도 낮추어 줄 것을 요청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8년 5월 6일자)

6) 2008년 5월 시행

<표 III-1>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세부 내역

구분	시장		종목	징수기준	변경전 징수율	변경후 징수율
증권선물 거래소	주식시장		주식	거래대금	0.0055575%	0.004446%
	채권시장		국채	거래대금	0.00021375% (징수 유예)	0.000171% (징수 유예)
			REPO		5천 원 + 0.00003%×기간	4천 원 + 0.000024%×기간
	선물시장		Kospi200 스타지수	약정대금	0.000513%	0.0004104%
			기타선물	계약당	380원	304원
	옵션시장		Kospi200 개별지수	옵션대금	0.021375%	0.0171%
			국채,달러	옵션대금	0.0228%	0.01824%
증권예탁 결제원	증권회사 수수료	주식시장	주식	거래대금	0.002755%	0.002204%
		채권시장	채권	거래대금	0.00021375% (징수유예)	0.000171% (징수유예)
	선물 대용증권 수수료	선물시장	Kospi200 스타지수	약정대금	0.0000855%	0.0000684%
			기타선물	계약당	수탁: 99원	수탁: 79원
		옵션시장	Kospi200 개별주식	옵션대금	0.00361%	0.00288%
			국채,달러		거래: 0.004275% 권리행사: 99원	거래: 0.00342% 권리행사: 79원
	증권업협회	주식시장		주식	거래대금	0.001026%
선물시장		주식관련선물	약정대금	0.000171%	0.0001368%	
옵션시장		주식관련옵션	옵션대금	0.000855%	0.000684%	
선물협회	선물시장(선물사)		주식관련선물	약정대금	0.000085671%	0.0000685368%
			기타선물	계약당	63원	50원
	옵션시장(선물사)		주식관련옵션	옵션대금	0.003569625%	0.0028557%
			국채,달러		0.0038076%	0.00304608%
	선물시장(증권사)		주식관련선물	약정대금	0.000171%	0.0001368%
	옵션시장(증권사)		주식관련옵션	옵션대금	0.000855%	0.000684%

주: * 증권예탁결제원의 증권회사수수료 20% 인하 5월 1일부 기 시행중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8년 5월 6일자)

- <표 III-1>은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 징수율을 보여주고 있음.
- 예를 들어, 투자자 입장에서 KOSPI 200 선물을 거래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율은 인하 후 0.0006841%(선물회사 이용시), 0.0007526%(증권회사 이용시) 수준
 - KOSPI 200옵션의 경우는 변경 후 0.02352%(선물회사 이용시), 0.02135%(증권회사 이용시) 수준으로 하락
 - 증권예탁결제원은 2005년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50%를 실제 감면해주고 있음.

- 실제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상기의 수수료와 함께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추가됨.
- A증권사의 경우를 실제 사례로 들면 <표 III-2>와 같음.

<표 III-2> 주가지수 선물·옵션 수수료율

선물		옵션
약정금액 ¹⁾	수수료율	
5억원 이하	0.044863%	거래금액의 1.1955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039863%+25,000원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0.034863%+75,000원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0.029863%+175,000원	
50억원 초과	0.024863%+425,000원	

주: 1) 종목별, 매도/매수 별로 약정금액을 합하여 구간 수수료율을 적용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006년 7월에도 거래소의 모든 상장품목에 대하여 기존 수수료의 5%를 인하함⁷⁾.
- 그 이전에 2005년 7월에도 주식·선물·옵션 수수료를 10% 인하하였 으며, 2005년 1월에는 연회비를 폐지하여 연간 200억원⁸⁾ 규모의 회원

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보도자료: 제6차 이사회 결과(2006. 7. 12)

비용을 경감시킴.

- 거래소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으며, 아래 제2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의 거래수수료율은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2. 외국과의 비교

□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주식 및 선물거래 등에 대해 거래수수료 및 청산수수료 등을 부과함.

- 그러나 동경증권거래소의 S&P/TOPIX 150 선물과 옵션거래에서와 같이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거래소에 비해 낮은 거래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⁹⁾.

- KOSPI 200 선물의 경우 1996년 5월에 개장한 이래, 거래소의 수수료율이 10년간 0.0018%에서 0.000513%로 71.5% 인하됨.
- KOSPI 200 옵션의 경우에는 1997년 7월에 개장한 이래, 거래소의 수수료율이 10년간 0.06%에서 0.021375%로 64.3% 인하됨.
- 주식의 경우에도 최근 10년간 0.012%에서 0.0055575%로 53.6% 인하됨.

8) 동 규모는 수수료의 10% 수준

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보도참고자료 2006. 7. 12.

<표 III-3> 주요 거래소의 거래대금 대비 거래수수료율 순위

(수수료율순)

	거래소명	시장규모(KRX=1.0)	수수료율(1만분의)	비고
1	LSE(런던)	11.93	0.229	
2	Nasdaq	12.16	0.289	
3	TSE(동경)	3.68	0.337	현·선
4	NYSE	16.65	0.348	
5	Oslo	0.15	0.534	현·선
6	KRX	1.00	0.535	
7	TSX(토론토)	0.97	0.555	현·선
8	SET(태국)	0.16	0.558	현·선
9	Euronext	2.86	0.601	
10	HKEx(홍콩)	1.18	0.667	
11	ASX(호주)	0.74	0.807	
12	Borsa Italiana	1.44	0.808	
13	Deutsch Borse	2.34	0.826	
14	Taiwan	1.07	0.830	
15	SWX(스위스)	1.10	1.153	
16	OSE(오사카)	0.20	1.684	현·선
17	Malaysia	0.09	2.732	
18	SGX(싱가폴)	0.14	3.677	

주: 1. 수수료율=수수료수입/(거래대금×2)

2. 대상거래소의 최근 3년간 거래수수료율의 평균값 비교

3. 주식거래대금 및 수수료수입은 해당 거래소의 회계연도 기준자료임.

4. WFE 2004년 거래대금 기준 KRX 기준 상하위 동수 거래소중 자료 확보 가능한 18개사 대상

자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보도참고자료(“제6차 이사회결과(2007. 7. 12)”)

□ <표 III-3>은 주식거래대금에 대한 수수료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증권선물거래소는 해외 18개 주요 거래소 중에서 6번째로 저렴한 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 시장규모가 비슷한(거래대금 ± 20%) 거래소 중에서는 수수료가 가장 낮음.

□ <표 III-4>는 세계 여러 거래소의 주가지수 선물, 옵션 수수료를 보여주고 있음.

-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및 옵션거래에 대해 거래건당 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정률로 부과하는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음.

□ 특히, <표 III-4>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선물·옵션 수수료는 2006년 6월 기준 세계 최저수준임.

- 특히 옵션의 경우 타거래소의 1/15 미만 수준임.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의 부과는 거래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나, 세율수준에 따라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III-4> 주가지수선물·옵션 수수료 국제비교표

(선물·옵션순, 1계약당 수수료순)

	상품	계약단위	거래수수료 (수탁기준)	달러환산 1계약당수수료
선 물	KOSPI200 (한국)	지수×50만원	0.000513%	\$0.30
	CAC40 (Euronext-Liffe/영국)	지수×10유로	£ 0.25	\$0.31
	DOW Jones STOXX50 (Eurex/유럽)	지수×10유로	0.30유로	\$0.38
	Nikkei225 (싱가폴)	지수×500¥	싱가폴\$0.60	\$0.38
	DAX (Eurex/유럽)	지수×25유로	0.50유로	\$0.63
	SPI200 (호주)	지수×호주\$25	호주\$0.90	\$0.67
	Nikkei225 (OSE/일본)	지수×1,000¥	0.0006%	\$0.78
	DOW (CBOT/미국)	지수×\$10	\$0.95	\$0.95
	Volatility (CBOE/미국)	지수×\$100	\$1.0	\$1.00
	E-mini S&P500 (CME/미국)	지수×\$50	\$1.14	\$1.14
	HangSeng (홍콩)	지수×HK\$50	HK\$10	\$1.29
	S&P500 (CME/미국)	지수×\$250	\$2.28	\$2.28
옵 션	KOSPI200 (한국)	프리미엄×10만원	0.021375%	\$0.01
	Russell 2000 (CBOE/미국)	지수×\$100	\$0.15	\$0.15
	CAC40 (Euronext-Liffe/영국)	지수×10유로	£ 0.25	\$0.31
	Nikkei225 (싱가폴)	지수×500¥	싱가폴\$0.60	\$0.38
	DOW Jones STOXX50 (Eurex/유럽)	지수×10유로	0.30유로	\$0.38
	SPI200 (호주)	지수×호주\$25	호주\$0.90	\$0.67
	DAX (Eurex/유럽)	지수×5유로	0.75유로	\$0.94
	DOW (CBOT/미국)	지수×\$10	\$0.95	\$0.95
	E-mini S&P500 (CME/미국)	지수×\$50	\$1.14	\$1.14
	HangSeng (홍콩)	지수×HK\$50	HK\$10	\$1.29
	S&P500 (CME/미국)	지수×\$250	\$2.28	\$2.28

주: 2006. 6. 13 기준환율 961.8원/USD, 최근 3년 평균 KOSPI200지수(111.22p)

자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보도자료(“제6차 이사회결과”)

IV.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검토

1. 거래세 부과의 장단점

□ 증권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생각할 수 있음.

(1) 투기를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투기 거래가 없다면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유동성의 부족을 초래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나 시장 변동성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투기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 거래세의 부과가 과도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대체로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정보력이 부족한 아마추어 투자자(noise trader)들의 거래를 억제한다는 것임.

(2)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자본비용을 낮춤.

-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게 되면,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집중을 억제하고 보다 생산적인 자본의 배분이 일어나 자본비용을 낮추는 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됨.

(3) 세수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거래세의 부과는 소득세에 비하여 징세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4)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이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음.

- 소득세의 경우, 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외국인의 경우 면세되는 경

우가 많은 데 비하여 거래세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징수 가능

□ 한편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을 것임.

(1) 거래비용의 증가는 시장 효율성을 낮출 우려가 있음.

- 거래비용의 증가는 고정화 효과(lock-in effect)로 인하여 차익거래나 시장안정화 성향이 있는 투자를 억제하게 되어 최적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방해하게 됨¹⁰⁾.
- 투기거래의 감소는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거래의 해외유출 가능성이 있음.

- 시장 개방과 금융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거래세로 인하여 거래비용이 높아진다면,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해외 시장으로 거래가 유출될 수 있음.

2. 외국의 경험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증권거래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적지 않으나, 선물·옵션에 대해서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음.

- <표 IV-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가지수 선물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과 캐나다(퀘벡주), 브라질을 들 수 있으며,
-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양도가 있을 경우, 명의 변경시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10) Kiefer(1990), Hubbard(1993), Schwert and Seguin(1993), Hakkio(1994), Kupiec(1995) 등 참조.

<표 IV-1>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국가

국가	세율	비고
캐나다	0.5C\$	퀘벡 거주자만 해당
브라질	0.03%(옵션), 0.012%(선도거래)	
홍콩	0.2%(warrant)	인지세
대만	0.025~0.15%(지수 선물)	
싱가포르	0.2%(주식옵션 · 주식스왑)	인지세

자료: Pricewater House Coopers, *Taxation of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in Asia*, 2003.

1) 일본

-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고, 금융·자본시장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정책적 관점과 금융 글로벌화에 따르는 금융거래의 해외유출 가능성 확대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98년 세법개정에서 유가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세의 세율이 반감되었음.

<표 IV-2> 1998년의 세법개정

구분	경감 세율	이전 세율
① 선물거래(② 제외)	0.05/10,000	0.1/10,000
② 엔 금리선물	0.005/10,000	0.01/10,000
③ 옵션거래	0.5/10,000	1/10,000

주: 엔/달러 통화선물 및 달러 금리선물에 대해서는 거래소세 비과세

- 일본은 1999년 4월 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소세 및 유가증권거래세를 폐지하였음.
- 폐지 이전에 거래소세법은 1990년도에 개정되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및 옵션은 모두 과세대상

2) 스웨덴

□ 스웨덴은 1984년부터 선물·옵션 및 각종 국내 증권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였으나, 투자자들이 비과세되는 다른 파생상품(FRA, 스왑 등)과 해외 브로커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세금의 부과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거래를 해외로 유출시킨다고 보아 1992년에 폐지되었음¹¹⁾.

- 세율은 매수·매도시 0.5%씩 1%의 세율이 부과되었다가 1986년에 2%, 1991년 1월 1일부터 다시 1%로 환원되었으며, 이후 1991년 12월 1일에 폐지되었음.

3) 영국

□ 영국은 선물이나 옵션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옵션의 행사시에는 행사가격으로 기초 증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인지세(stamp duty)는 증권의 소유권 이전 등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일반 거래세와 다소 차이가 있음.
- 영국에서는 인지세를 도입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스웨덴보다 세금회피 대체 현상이 적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증권사 명의(nominee account)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과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음.
- 따라서 소유권을 증권사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통상 3배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법률을 보완함.

11) Campbell and Froot(1993)

4) 대만

- 대만 영토내에서 수행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선물옵션, 주식옵션의 거래에 대하여 「선물거래세 조례(期貨交易稅 條例)」를 적용하여 부과됨.
 - 현재 시장에 등록되어 선물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주가지수선물임.
 - 납세의무자 및 대리징수인: 선물거래세의 거래 쌍방인이 납세의무자이며 先物去來商이 대리징수하여 납부
 - 계산방식: 선물거래세는 매회 거래가 발생시 계약금에 대하여 거래 쌍방인이 1000분의 0.25을 각각 납부함.
 - 선물거래상의 납부방식: 선물거래상은 거래당일 거래쌍방인에게 계약금액의 세율만큼을 징수하여 다음 날 납부하며 동시에 「선물거래세 대리납부서」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거래세 도입시의 검토 사항

가. 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

- 거래세 부과로 선물·옵션거래에 따르는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헤지거래보다는 투기거래의 경우에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거래비용의 증가 정도에 따라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음.
- 이론적으로는 장외시장으로의 유출도 가능함.
 - 그러나 현재 KOSPI 200 지수 선물 및 옵션에 대해서는 장외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선물과 옵션은 상품의 특성상 고객 맞춤형인 장외거래보다는 표준화된 장내거래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장외시장으로의 유출보다는 해외 거래소로의 유출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

□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이 해외에 상장된다면 거래세로 인하여 거래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도 있음.

- 그러나 증권선물거래소가 주가지수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해외에 상장되기 어렵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외의 유사상품으로 대체하기 위한 거래의 해외유출 가능성은 낮음.
- KOSPI 200과 유사한 상품을 상장할 수는 있으나, 국내 현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기초 상품으로 하는 한, 사무관련 비용 등 다른 부대비용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의 거래가 반드시 거래 비용을 절약한다고 할 수 없음.
- 거래세 세율에 따라 세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거래 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거래의 해외 유출이 결정될 것임.

□ 거래세의 도입이 시장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론적인 연구와 실증적 연구들이 모두 일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 못함¹²⁾.

□ 거래세 부과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Edwards(1992), Hubbard(1995) 등도 있음.

- 19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논의가 있을 당시, 거래세의 효과에 대하여 논하고 있음.
- 해외시장과의 경쟁을 고려할 때, 거래세의 부과가 미국 선물시장의 점유율을 낮출 것이며, 여러 가지 탄력성을 상정하여 세수효과를 측정한

12) Roll(1989), Kupiec(1991), Edwards(1992), Schwert(1993), Hakkio(1994) 등을 들 수 있음.

결과 낮은 세율에서도 세수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 또한 0.5%의 세율이 부과되더라도, 거래비용이 2,200%나 증가하여 거래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Edwards(1992)는 미국의 경우, 거래세 부과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에 따른 수요 탄력성을 -0.26, -1.0, -2.0, -20의 가정 하에 세수추계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세수가 미미한 것으로 결론¹³⁾.

<표 IV-3> 거래세 부과로 인한 연간 거래량 감소 추정

(단위: %)

세율	수요 탄력성			
	-0.26	-1.0	-2.0	-20
0.5	100	100	100	100
0.1	100	100	100	100
0.001	0.57	4.40	8.80	88

자료: Edwards(1992), p. 88.

<표 IV-4> 수요탄력성을 감안한 세수추계

세율	수요 탄력성			
	-0.26	-1.0	-2.0	-20
0.5%	\$0	\$0	\$0	\$0
0.1%	\$0	\$0	\$0	\$0
0.001%	\$287mil	\$276mil	\$264mil	\$35mil

자료: Edwards(1992), p. 88.

13) 거래비용에 대한 수요탄력성을 추정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시뮬레이션(Simulation)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0.26의 경우는 1990년대 초 미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선물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제안할 때 사용한 수치이며, -20은 미국의 선물거래가 해외시장과의 경쟁 및 자유로운 해외투자여건 등으로 탄력성이 매우 높음을 상정한 것임.

- Shiller(1992)는 시장상황에 따라 다른 세율을 부과하는 거래세를 제안하기도 하였음.
- 즉 거래량이 많거나 변동이 심한 날 등 어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임.
 - 물론 이 방식은 징세비용(administration cost)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음.

나. 인도의 상품거래세 도입사례

- 최근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인도에서 파생상품시장의 규모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
- 인도정부는 인도 최대 상품거래소인 멀티상품거래소(MCX)와 내셔널상품파생상품거래소(NCDEX)에 2008년 5월 1일부터 상품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함.

<표 IV-5> 인도상품거래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단위: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선물옵션이나 상품옵션 매매	매도자	옵션프리미엄	0.017
옵션행사시 선물옵션이나 상품옵션 매매	매수자	결제금액 (settlement price)	0.125
기타 파생상품 매매	매도자	매매가격	0.017

자료: <http://indiabudget.nic.in/ub2008-09/fb/bill61.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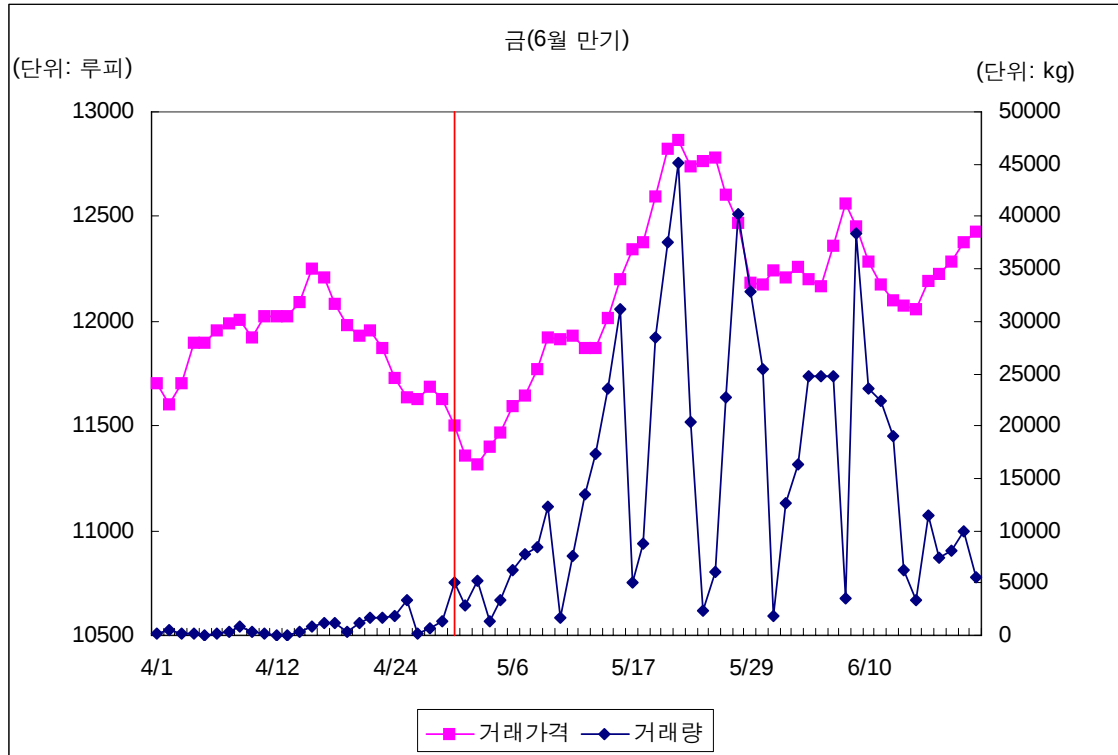
- 파생상품거래소(NCDEX)에서 거래되는 것 중 만기가 도래한 상품선물로써 가장 거래량이 상위인 상품 6개를 살펴보면, 과세부과시점(5월 1일)을 기준으로 실제 거래량과 거래가격의 변화를 살펴볼 때 상품거래세 부과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만기가 가까울수록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기가 6월 또는 7월인 상품 가운데, 거래량이 가장 많은 상품 6개를 선정
- 만기가 가까울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선물거래의 일반적 현상으로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5월 1일을 기점으로 특이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일단 [그림 IV-2]에서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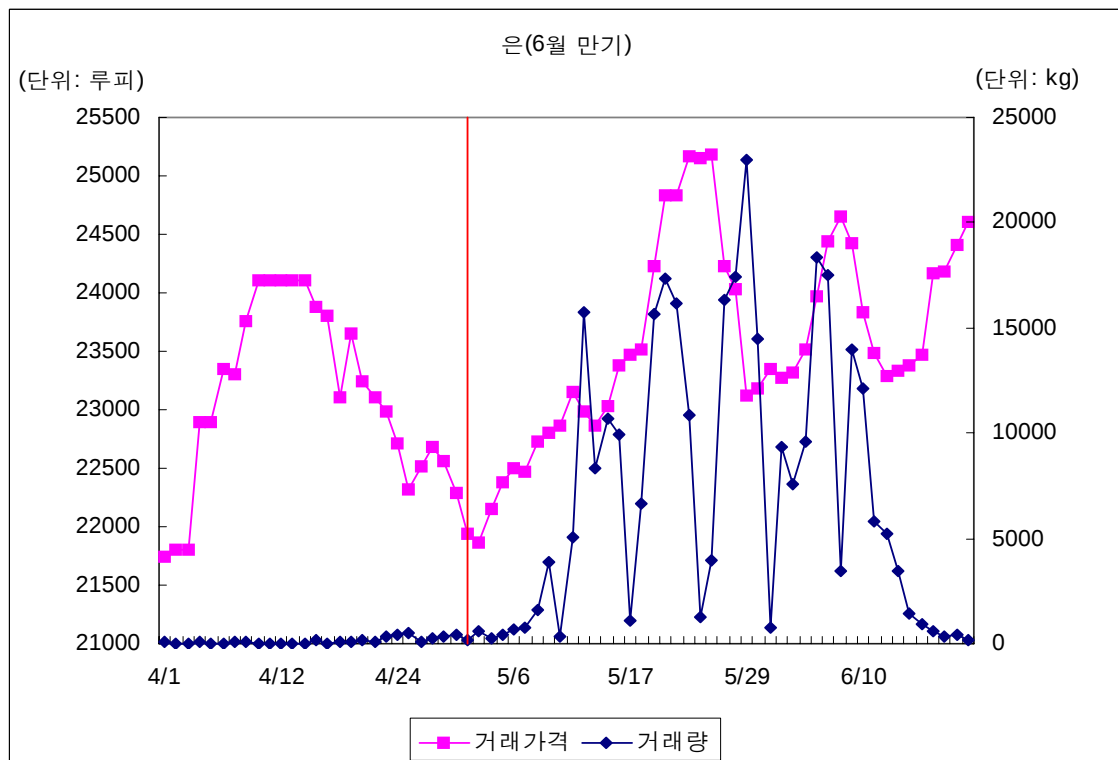
□ 또한 상품거래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품 거래량과 거래가격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Chow test를 실시함.

- 우선 거래가격과 거래량의 시계열에서 자기상관관계를 제거하고 검증
- 분석대상 상품에 대하여 ‘과세일 이전과 이후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의 구조적 변화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검증하였음.
 - Break point는 상품거래세 부과시점인 5월 1일로 하였음.
- 실증분석결과,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거래세 도입이 상품의 거래가격 및 거래량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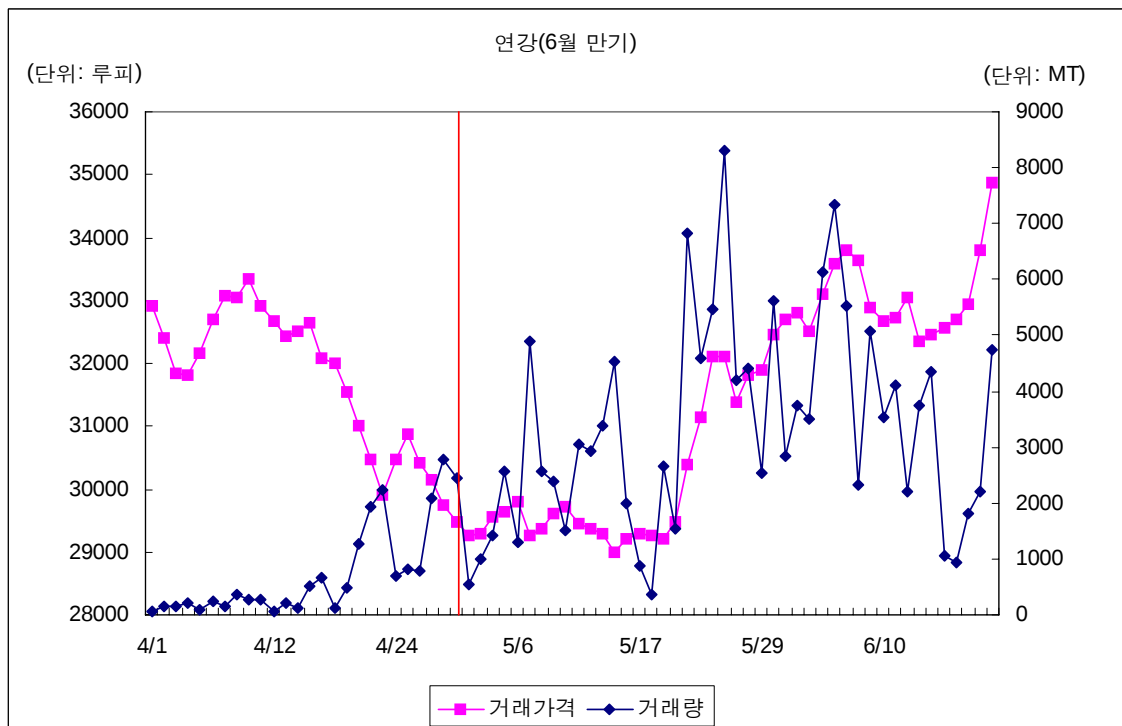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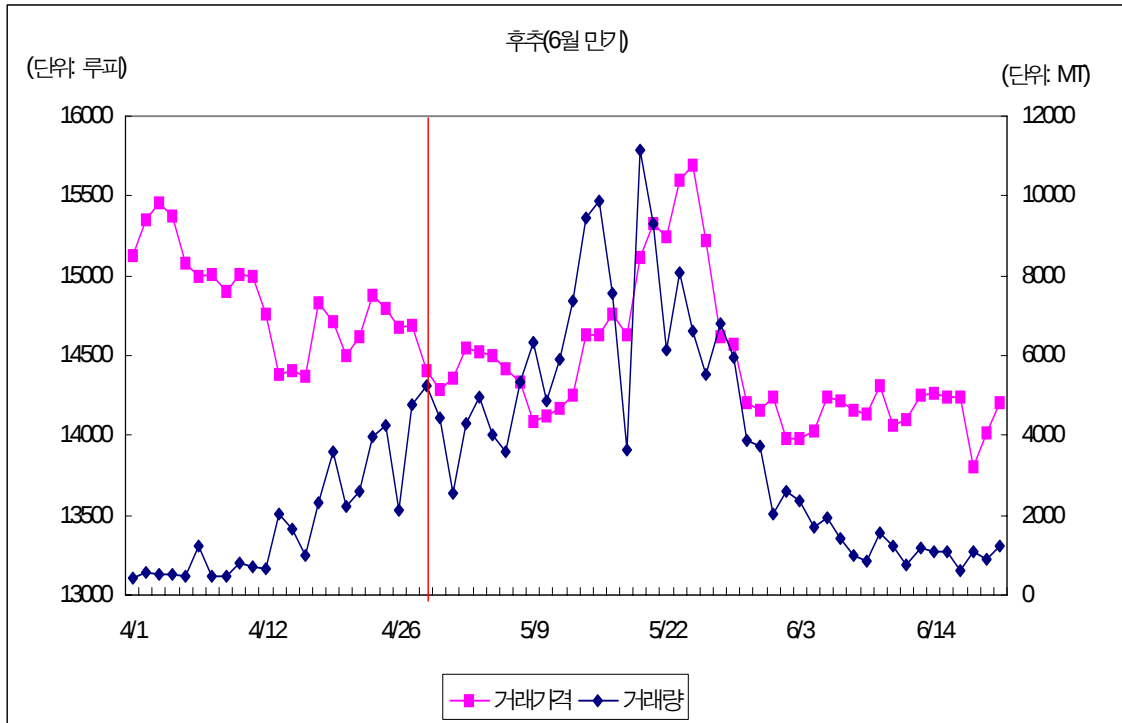
[그림 IV-2] 인도상품거래소(NCDEX) : 일일거래량과 거래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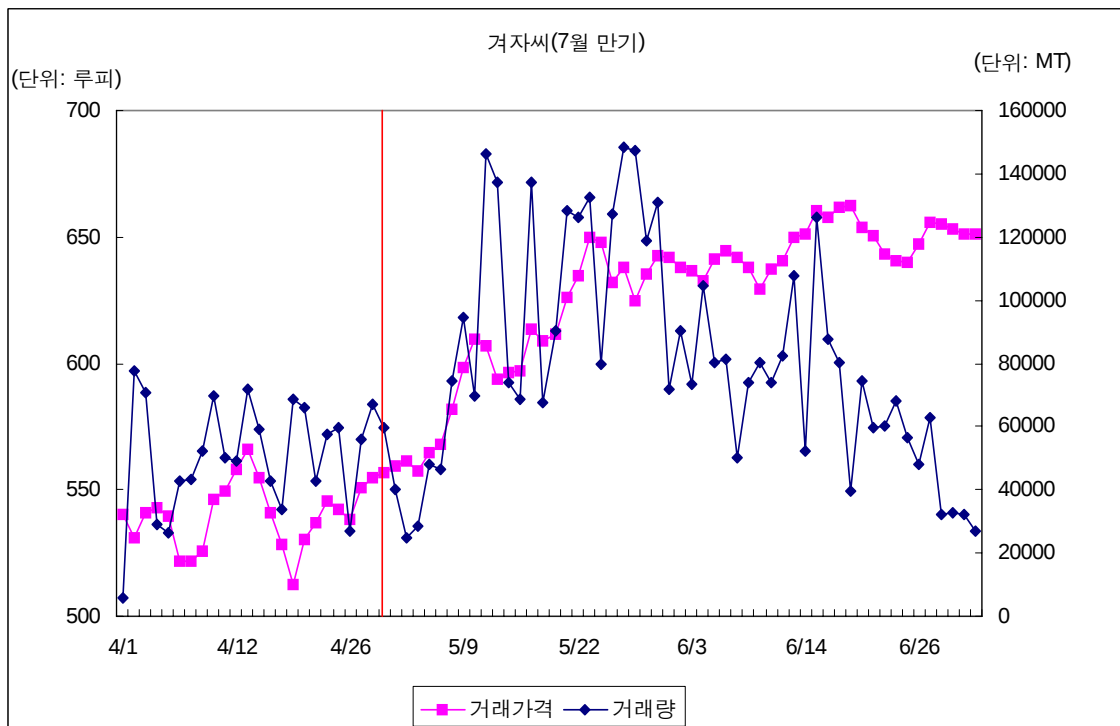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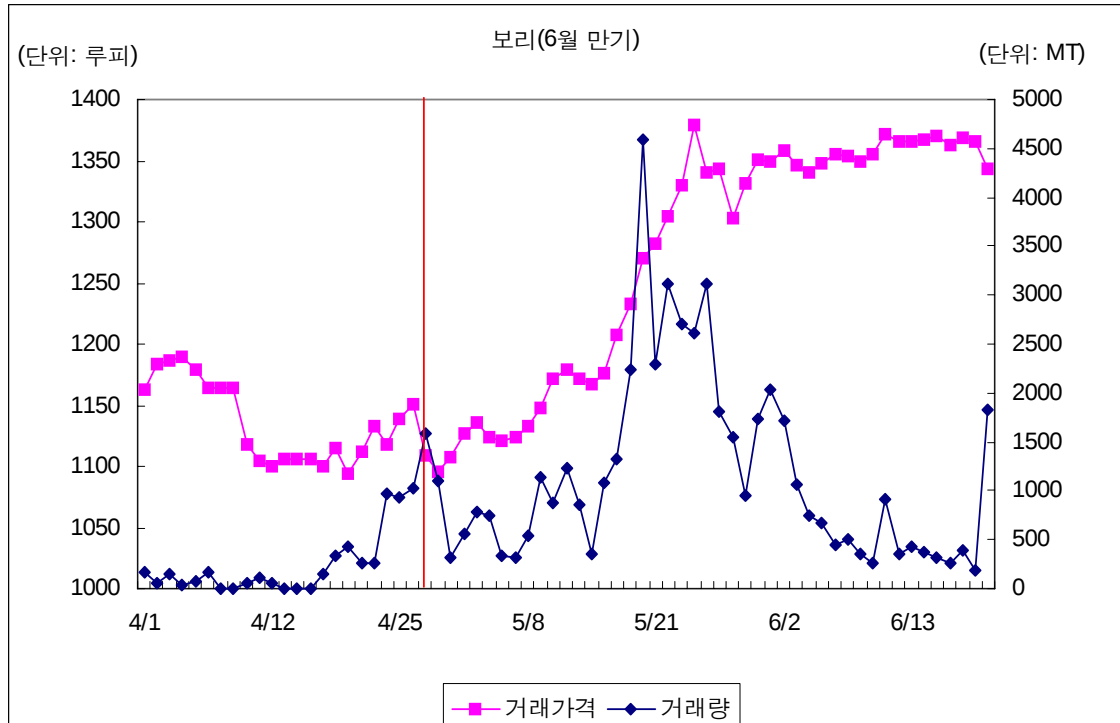
1) 7월 2일 기준 거래자료이며, 기준선은 “상품거래세” 부과 기준일(5월 1일)임.



[그림 IV-2]의 계속



[그림 IV-2]의 계속



<표 IV-6> 실증분석 결과치

	거래가격		거래량	
	F값	P-value	F값	P-value
금 ¹⁾ (n=70)	0.4258	0.73	0.0025	0.99
은 ¹⁾ (n=80)	0.1491	0.70	0.0104	0.99
후추 ¹⁾ (n=80)	0.1777	0.67	0.2093	0.81
연강 ¹⁾ (n=70)	1.3429	0.26	0.3162	0.81
보리 ¹⁾ (n=70)	2.5720	0.11	0.8065	0.45
겨자씨 ²⁾ (n=80)	1.9914	0.14	0.0034	0.99

주: 1) 6월 만기상품 2) 7월 만기상품 3) n은 sample size

4) 유의수준(5%=0.05)보다 크게 나와 귀무가설 채택

□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심리적인 효과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인도의 경우 조금 더 장기적인 효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선물거래세 도입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음.

4. 거래세 부과시 세부 고려 사항

가. 부과 대상

- 거래세를 부과한다면 KOSPI 200 선물 및 옵션에 대하여 먼저 부과하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모든 파생상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 시장에서 거래량이 충분치 못한 여타 파생상품시장 육성의 차원에서 KOSPI 200 선물 및 옵션에 대하여 먼저 거래세를 부과하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임.
 - 일본의 경우에도 거래소세가 부과될 당시, 동경금융선물거래소(TIFFE)에서 거래되는 달러·엔 통화선물, 美달러 단기금리선물, 일본엔 단기금리선물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세율경감조치가 취해졌음.
 - 이는 TIFFE가 다른 거래소보다 늦게(1989년) 개장하여 이들 상품의 상장 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배려 조치였음.
- 우리나라의 수수료 체계를 보더라도 거래가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음.

나. 납세의무자

- 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¹⁴⁾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징수·납부하게 함.
 - KOSPI 200 선물과 옵션 이외의 파생상품들도 한국거래소¹⁵⁾에서 장내 거래로 이루어질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동 기관을 납세의무자로 지정

14) 자통법의 시행으로 2009년부터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예탁 및 결제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담당하게 됨.

15) 자통법의 시행으로 2009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게 됨.

□ 장외거래 등을 고려한다면, 대체결제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파생상품의 경우, 이를 거래하는 금융투자회사¹⁶⁾와 궁극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임¹⁷⁾.

-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
- 그 밖의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
-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파생상품을 금융투자회사를 거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생상품의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

□ 징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거래세의 부과방식은 현재 징수되고 있는 수수료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현재 수수료는 매수·매도시 각각 적용됨.
- 스웨덴과 대만의 경우에도 양쪽으로 징수
- 따라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거래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 적정
- 이 경우, 세율은 증권거래세와 같이 양도자만 납부하는 경우에 비하여 1/2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음.

□ 선물의 경우, 계약체결 거래와 반대 매매 모두 거래세 부과 가능

- 만기까지 계약을 보유하여 현금결제를 하게 될 경우(KOSPI 200 선물)에도 최종거래로 보아 거래세 부과는 가능하다고 봄.
- 결제 수수료도 부과되고 있음.

□ 옵션의 경우, 계약체결 거래와 행사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세 부과 가능

16) 자통법의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에서 파생상품의 거래를 취급하게 됨.

17) 현행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1/2의 세율로 양도·양수 시 모두 부과하는 것을 상정

- 옵션 행사시 OTM¹⁸⁾ 상태에서 옵션의 가치가 없이 행사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거래로 보지 않음.
- 행사시 ITM¹⁹⁾ 상태라면 KOSPI 200 옵션도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최종거래로 볼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

다. 과세표준

-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을, 옵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premium)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임.
- KOSPI 200 선물의 경우, 「KOSPI 200 지수 수준 × 50만원」이 약정금액이 됨.
- KOSPI 200 옵션의 경우, 실제 지불금액(premium)이 과세표준이 됨.

라. 세율

- 세율은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옵션의 경우는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옵션의 세율이 선물의 세율보다 높음.
- 현물 주식에 비해서는 과세표준이 훨씬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도입 초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18) Out of the money는 콜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고, 풋옵션의 경우는 그 반대로 옵션의 가치가 0인 경우

19) In the money는 OTM의 반대로 행사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로 옵션 보유자가 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

- 세수를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의미있는 세수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래세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를 생각하면 낮은 세율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 새롭게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파생금융상품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의 증가가 해외 유사 거래를 이용할 경우의 거래 비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상대적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초기에 낮은 세율로 인하여 세수가 그다지 크지 않더라도 거래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

5. 거래세 제도 정비 방안

- 세계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는 소득세 체계가 일반적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세 도입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경제·정치적인 상황 등으로 인하여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세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바, 가시적인 미래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제가 도입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그렇다면 차선택책으로서 소득세제가 도입되기까지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에 대한 거래세를 고려할 수 있음.
- 금융시장 및 산업 자체만 고려한다면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거래세의 부과는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시장효율성을 저해함.
 - 국제적인 시장의 통합과 거래소간의 합병·제휴 등 국제적인 경쟁을 고려하고, 거래세를 폐지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거래세의 도입은 금융투자업에 다소나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형평성의 측면과 재정수요 등을 감안하고, 현재의 선물거래규모를 고려할 때 거래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
 - ‘잠정적’이란 의미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소득과세체제가 도입될 때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음.

- 거래세의 부과는 세수확보라는 기본적인 조건 이외에도 징세행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에 관한 한, 지수에 대한 배타적 권리 및 대체투자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그 대체 탄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거래세 도입 단계에서 경제외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거래세의 도입만으로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증권선물거래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KOSPI 200 선물과 옵션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지금까지 동 수수료율은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음.
 - 거래세의 부과는 이러한 수수료율을 다소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
 - 따라서 일단 낮은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 낮은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하면 다른 나라보다 거래 비용에 있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거래비용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음은 여전히 우월한 투자환경을 제공

- 결국 거래세의 도입은 도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렇다고 도입 자체가 금융시장에 커다란 부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가져오지도 않을 것임.
- 도입 여부는 세제상의 형평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세원 개발의 필요성 등 여타 정치·경제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결정할 문제이나, 이러한 요인들이 거래세 도입에 장애가 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판단임.

V. 결론 및 요약

- 현재 우리나라의 선물·옵션 거래는 1996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
 - 현재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연간 거래금액은 ‘경’단위로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현재 그 거래량이 세계 최고 수준
 - 이러한 시장의 성장에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비과세 정책도 크게 기여하였음.

-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KOSPI 200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거래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상
 -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파생금융상품시장에 대해서만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국제적으로 볼 때,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물시장에서 양도차익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차익과세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의 도입이 차선택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

-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자본비용을 낮추며, 세수 증대에도 기여함.
- 반면, 거래세 부과의 단점으로는 거래비용의 증가로 인한 시장 효율성의 저하, 거래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들 수 있음.

□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의 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며 대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미 시장이 확립된 KOSPI 200 선물 및 옵션의 경우, 거래세의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며 최소한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최근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한 인도의 경우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KOSPI 200 지수에 대해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
- 해외 시장에서 KOSPI 200 지수와 유사한 지수를 상장할 가능성은 있으나, 거래가 해외로 유출될 것인가는 결국 상대적인 거래비용의 문제임.
 - 우리나라의 거래수수료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며, 특히 옵션 거래에 드는 거래비용은 차상위 거래소와 비교할 때 1/15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거래 비용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음.

□ 따라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한다면 거래 비용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할 정도로 초기에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과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거래세의 부과로 거래비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여전히 우리 시장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07년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2008. 3. 27.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대폭 인하 추진』, 2008. 5. 6.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2006. 12.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KRX 선물시장의 어제와 오늘』, 2008.
- _____, 『증권선물』, 각 연도.
- _____, 『증권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보도참고자료, 『제6차 이사회 결과』, 2006. 7. 12.
- 홍범교,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및 과세문제』, 한중 공동심포지엄,
2007. 3.
- 홍범교·이장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10.
- Campbell, J. and K. Froot, "International Experience with Securities Transactions
Taxes," NBER Working Paper No. 4587, December, 1993.
- Edwards, F., "Taxing Transactions in Futures Markets: Objectives and Effects,"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1992, pp. 75~91.
- Ginn, M., "Accounting and Taxation of Derivatives: Taiwan," *DFI*,
July/August, 1999, pp. 171~76.
- Hakkio, C., "Should We Throw Sand in the Gears of Financial Markets?,"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Vol. 79, No. 2,
1994, pp. 17~31.
- Hubbard, G., "Securities Transactions Taxes: Tax Design, Revenue, and Policy
Considerations," *Tax Notes*, November 22, 1993, pp. 985~1000.
- _____, "Securities Transactions Taxes: Can They Raise Revenue?" in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ed. by S Hammond, Catalyst

- Institute, 1995.
- Ikeda, Y., "Taxation of Derivatives: Japan," pp. E1-1 ~ E1-23.
- Kawamura, Y., et al., "Japan: Circular on Derivative Products," *DFI*, May/June, 1999, pp. 159 ~ 65.
- Kiefer, D., "The Security Transactions Tax: An Overview of the Issues," *Tax Notes*, August 13, 1990, pp. 885 ~ 901.
- Kupiec, P., "Stock Market Volatility in OECD Countries: Recent Trends, Consequences for the Real Economy, and Proposals for Reform," *OECD Economic Studies*, Vol. 17, Autumn, 1991, pp. 31 ~ 62.
- _____, "A Securities Transactions Tax and Capital Market Efficiency,"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Vol. XIII, January, 1995, pp. 101 ~ 112.
- Linsday, J., "Taxation of Index Options: United Kingdom," *DFI*, January/Feb, 2000.
- Pricewater House Coopers, *Taxation of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in Asia*, 2003.
- Roll, R., "Price Volatility, International Market Links, and Their Implications for Regulatory Policies,"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Vol. 3, 1989, pp. 211 ~ 46.
- Schwert, W., "Stock Market Volatility," *Financial Analysts Journal*, Vol. 46, May-June, 1993, pp. 23 ~ 24.
- _____ and P. Seguin,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An Overview of Costs, Benefits and Unresolved Questions," *Financial Analysts Journal*, Vol. 46, September-October, 1993, pp. 27 ~ 35.
- Shiller, Robert J., "Who's Minding the Store?" in *The Report of the Twentieth Century Fund Task Force on Market Specul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1992.

Watanabe, Y., "Tax Aspects of Financial Derivatives: Japan," *Asia-Pacific Tax Bulletin*, May, 1999.

<http://www.krx.co.kr>

<http://indiabudget.nic.in/>

<http://www.ncdex.com/>